중국농업동향

전 형 진 전문연구원 리 경 호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전형진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리경호 연구원 자료수집 및 정리

머 리 말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 15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교류가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의 교역도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농림수산물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농림수산물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적자폭도 확대되었고,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한중 FTA 협상의 전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가 추진됨으로써 중국과의 FTA 협상 시작이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체결되면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더욱 더 증가하고 국내 농업의 중국 농업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더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 농업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국내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은 올해 북경에 개원한 중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중국 농업의 최신 동향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이를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중국농업정보'사이트와 분기별『중국농업동향』보고서를 통해 분산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중국농업정보'홈페이지 구축과『중국농업동향』보고서 발행에 앞서 홈페이지의 활용계획과 함께 2007년도 중국 농업의 주요 동향을 정리하여『중국농업동향』보고서의 시안으로 제시하였다. 중국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우리 연구원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 농업정보의 수집, 축적, 관리 및 분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기대한다.

200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우리 연구원은 북경에 개원한 중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중국 농업의 최신 동향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연구원 홈페이지와 분기별 『중국농업동향』보고서를 통해 분산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중국농업정보'홈페이지 개설과『중국농업동향』보고서 발행에 앞서 홈페이지 활용계획과 동향보고서의 체제를 시범적으로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내 농업이 중국 농업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고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축적· 관리·분산하기 위한『중국농업동향』보고서 발행의 필요성과 보고서 체제 및 연구 추진체계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였다.

둘째, 『중국농업동향』 보고서 체제에 대한 구상을 기초로 시범적으로 2007년도 중국 농업의 주요 동향을 정리하여 『중국농업동향』시안(試案)을 제시하였다.

『중국농업동향』보고서는 '농업정책 브리핑',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정연구 이슈', '정책자료', '농업통계' 등 5개 부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농업정책 브리핑'에서는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현안에 대해 정책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사점, 전망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업·농촌경제동향'에서는 중국 통계당국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중국 농업의 생산·유통·가격·소비·무역 동향 및 농촌·농가경제 동향 등을 분석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농정연구 이슈'에서는 중국 내 주요 농정연구기관의 농정연구 동향을 소개할계획이다. '정책자료'에서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주요 법률, 행정법규, 규칙 등의 자료와 중국농업 관련 국내외 보고서, 논문 등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농업통계'에서는 중국 농업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농업동향』보고서는 1년에 4회, 분기별로 발행하고,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농업정보' 홈페이지를 새롭게 마련하여 이들 정보를 온라 인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본 연구원 중국사무소와 유기적인 연계하에 주요 일간지, 농업전문지, 지방지, 인터넷 매체 등의 농업관련 보도내용을 요약 정리한 '농업동향 스크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농업정책 브리 핑'은 웹진(Webzine) 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시안으로 제시한 2007년 중국농업동향은 '농업정책 브리핑', '농업·농촌 경제동향', '정책자료', '농업통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농업정책 브리핑'은 농업·농촌문제와 '중앙 1호 문건', 2007년 농업부문 재정투자, 『물권법』제 정과 농촌 토지소유제도, 『농민전업합작사법』시행과 중국의 농민협동조직, 도농 통합발전 신특구 정책, 2007년 주요 농업법규 및 규칙(規章) 등 6개 주제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농업·농촌경제동향'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 농업·농촌경제동향, 2007년 1~9월 동안의 농산물 가격, 농산물 무역, 농민소득 동향을 정리하였다. '정책자료'로는 개혁개방 이후 1982~1986년과 2004~2007년 등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9차례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의 요약 번역자료, 『물권법』중 농업관련 부분요약 번역자료, 『농민전업합작사법』의 전문 번역자료, '중국의 식품 품질안전 현황' 요약 번역자료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통계'부분에는 2007년 1~9월 동안의 성별 농업총생산액,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과지출, 1978~2005년 동안의 농업재정 지출 현황 자료를 수록하였다.

ABSTRACT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tailed plan of the chapters which will make up the forthcoming quarterly report titled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To achieve the objective, Chinese agricultural trends in 2007 have been analyzed and presented in this stud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will be composed of five chapters: agricultural policy brief, agricultural and rural economic trends, issues of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policy data, and statistics of Chinese agriculture. Firstly, the agricultural policy brief will analyze pending issues of Chinese agricultural policy. Secondly, the agricultural and rural economic trends will analyze the trends of Chinese agricultural and rural economy on the basis of statistical data from the Chine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n such matters as production, distribution, price, consumption, and trade. Thirdly, the issues of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will introduce research trends at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in China. Fourthly, the policy data will furnish translated versions of Chinese agricultural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rules of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Lastly, the chapter on statistics of Chinese agriculture will affor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tatistical data related to Chinese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is planned to be published quarterly and put on the KREI website as well. Among the chapters of the book, the agricultural policy brief will be provided regularly in the form of a webzine, summarizing important information on Chinese agriculture periodically.

The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07」 presented as a sample in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agricultural policy brief, agricultural and rural economic trends, policy data, and statistics of Chinese agriculture. Six pending issues of Chinese agricultural policy have been analyzed in the first chapter. The second chapter summarized Chinese agricultural and rural economic trends in 2006 and provided trends in farm product prices,

agricultural trade, and farmer's income in the first three quarters of 2007. The translated data regarding Chinese agriculture was presented in the third part. In the last chapter, the book provided gross values of Chinese agriculture, farmer's cash income, and the expenses in the same period.

Researchers: Hyoung-Jin Jeon and Jing-Hu Lee

E-mail address: hjchon@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제2장 『중국농업동향』의 구성 및 추진 체계	
1. 『중국농업동향』의 구성 ···································	
제3장 『중국농업동향』(시안)	
I. 농업정책 브리핑	
<개요>	
1. 중국 농업·농촌문제와 '중앙 1호 문건'	5
2. 2007년 농업부문 재정투자	21
3.『물권법』제정과 농촌 토지소유제도	31
4. 『농민전업합작사법』시행과 중국의 농민협동조직	42
5. 도농 통합발전 신특구 정책	55
6. 2007년 주요 농업법규 및 규칙(規章)	59
Ⅱ. 농업·농촌경제 동향	
1. 2006년 중국 농업·농촌경제 동향 ······	64
2. 농산물 가격 동향	67
3. 농산물 무역 동향	69
4 노미人드 도하	72

Ш	· 정책자료	
	l. 농업·농촌경제 관련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	74
	2.『물권법』농업관련 부분	82
	3.『농민전업합작사법』전문	91
	4. 《중국의 식품 품질안전 현황》요약10	02
IV	· 농업통계	
	1. 2007년 1~9월 농업총생산액10	06
	2. 2007년 1~9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10	07
	3. 2007년 1~9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지출 10	08
	4 중국의 농업재정 지춬. 1978~2005년 ···································	ე9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농림부 홈페이지 '해외농업동향'
그림 1-2.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해외농업정보'
그림 1-3.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산업정보-KIET 해외산업정보'
그림 1-4.	중국경제모니터링시스템 홈페이지 '산업정보-중국산업정보'
제2장	
그림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세계지역정보-중국경제현안브리핑'…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992년 이후 올해로 수교 15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짧은 기 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등 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급속 히 확대되고 있음.
 - 경제분야에서는 1992년 양국간 교역액이 63.7억 달러(수입 37.2억 달러, 수출 26.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180억 달러(수입 485억 달러, 수출 695억 달러)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음.
 -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이자 최대 무역흑 자국, 최대 투자진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수출주도형의 우리나라 경 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 한·중 수교 이래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 하고 있지만 농림수산물 교역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산 농림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양국간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1992년 10.8억 달러(수입 10.7억 달러, 수출 13.6백만 달러)에서 2006년 35.7억 달러(수입 32.4억 달러, 수출

- 3.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음.
- 2005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농림수산물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2006년도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 115.7억 달러 가운데 중국이 32.4억 달러로 전체의 28.0%, 미국이 29.8억 달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였음.
- 중국 농업에 대한 의존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 농업은 중국 농산물의 수급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중국과의 FTA체결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조만간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이 더욱 더 증가하여 국내 농업의 중국 농업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는 중국 농업정책의 변화,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농산물 수급구조의 변화 등 중국 농업관련 최신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중국 농업정보 수요자들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
 - 본 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농업정보' 메뉴의 '세계농업정보' 사이 트와 월간『세계농업뉴스』를 통해 중국 농업관련 동향자료를 부분적으로 제공해 왔음. 그러나 부정기적인 외부 기고에 의존하고 있고, 내용 또한 중국 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 파악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다양한 정보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 농림부는 부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해외농업동향' 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농업정책 동향과 언론보도 내용을 서비스하고 있음. 농촌 진흥청에서도 부정기적으로 중국의 농업기술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해외농업정보'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음. 이들 동향자료 역시 중국 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 파악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림 1-1. 농림부 홈페이지 '해외농업동향'

그림 1-2.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해외농업정보'





그림 1-3.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산업정보-KIET 해외산업정보'

- 산업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산업정보' 메뉴의 'KIET 해외산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국외수집자료, KIET발간자료, 국내수집자료로 분류하여 중국 농업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국외수집자료는 주로 중국 정부 및 연구기관의 발표자료나 언론 보도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음. 축적된 자료가 많고 자료의 업데이트도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정부기관 혹은 연구기관의 발표자료나 언론 보도내용을 번역 소개하고 있어 중국 농업 전반의 동향 파악에는 미흡한점이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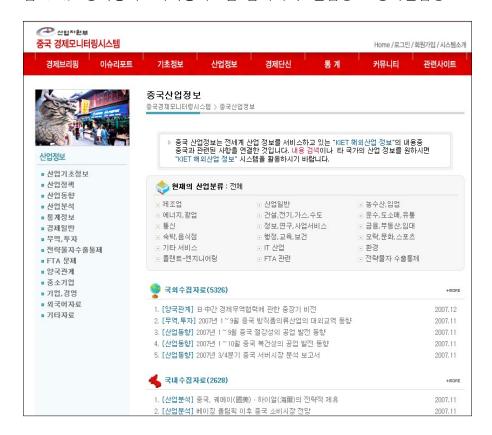


그림 1-4. 중국경제모니터링시스템 홈페이지 '산업정보-중국산업정보'

- 산업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는 'KIET 해외산업정보'중 중국 농업관련 정보는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연구소, 수출입은행, 국제금융센터,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재단등이 공동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모니터링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중국산업정보' 메뉴를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음.

¹ 산업자원부의 위탁으로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http://china.go.kr/servlet/main?cmd=first.

○ 국내 농업이 중국 농업의 영향권에 있고, 그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농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신 중국 농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함. 또한 수집 분석된 자료를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국 농업정보 수요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정보의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본 연구원이 중국 농업정보의 수집·가공 및 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농업의 최 신 동향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 정보를 중국 농업정보 수요자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 하는 중국 농업 정보체계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 분석된 중국 농업 정보를 분산하기 위한 분기별『중국농업동향』보고서 발행에 앞서 보고 서의 체제와 주요 내용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2007년도 중국 농업의 주요 동향을 정리하여『중국농업동 향」의 시안(試案)으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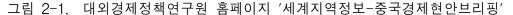
제 2 장

『중국농업동향』의 구성 및 추진 체계

1. 『중국농업동향』의 구성

1.1. 《농업정책 브리핑》

-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현안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설자료를 작성하여 일 차적으로 본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웹 진(Webzine) 형식으로 분산함.
- 정보의 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해 해설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웹 진 형식으로 분산하는 방식은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가공없이 단순 분산하는 방식보다 선호되고 있음. 이는 연구기관의 장점 을 극대화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은 방식이며 타 연구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는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경제현안에 대한 해설자료를 부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세계지역정보' 메뉴의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사이트를 통해웹진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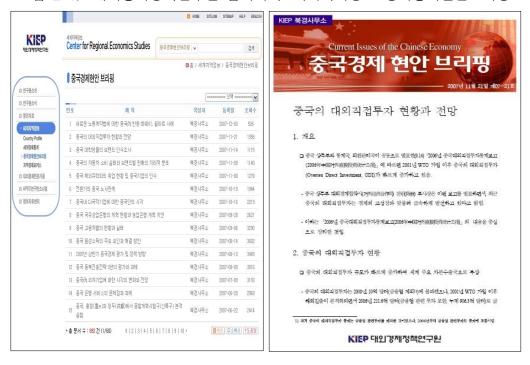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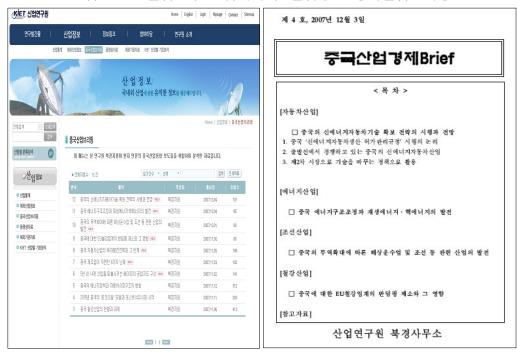


그림 2-2.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산업정보-중국산업브리핑'



- 산업연구원(KIET) 북경지원은 현지 언론의 중국 산업동향 보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산업정보' 메뉴의 '중국산업보리핑' 사이트를 통해 웹진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현안과 관련된 정보는 관련 부처 및 농정연구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본 연구원 중 국사무소와 중국 정부기관 및 농정연구기관, 농업정책 담당자 및 연구자 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질 높은 자료의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중국의 농업정책 현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주요 모니터링 대상 인 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農業部 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
 - 農業部 農村經濟研究中心 http://www.rcre.cn/
 - 國務院 http://www.gov.cn/flfg/bmgz.htm
 -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http://www.drc.gov.cn/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http://www.sdpc.gov.cn/
 - 商務部 http://www.mofcom.gov.cn/
 - 北京大學 中國經濟研究中心 http://www.ccer.edu.cn/cn/
 - 中國農業大學 http://www.cau.edu.cn/
 - 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 http://rdi.cass.cn/
 - 中國社會科學院 人口與勞動經濟研究所 http://iple.cass.cn/
 - 中國社會科學院 經濟研究所 http://ie.cass.cn/
 - 中國農業科學院 農業經濟與發展研究所 http://www.iae.org.cn/
-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산되는 웹진 '농업정책 브리핑'을 기초로 이를 보완·보충하여 분기별로 발행하는『중국농업동향』의 '농업정책 브리핑' 부분에 수록하여 오프라인으로 분산함.

1.2. 《농업동향 스크랩》

- 중국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일간지, 농업 전문지, 지방지 등의 농업관련 보도내용을 요약·정리함. '농업정책 브리핑'이 주요 농업현안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농업동향 스크랩'은 농업정책 동향뿐만 아니라 지역농업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중국 농업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요약·정리된 중국 농업관련 보도내용은 일차적으로 본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사이트를 통해 분산함. 이 '농업동향 스크랩'자료는 여건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하거나 일주일 단위로 웹진 형식으로 분산할 수 있음. 축적된 자료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농업정책 브리핑'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중국의 주요 일간지, 농업전문지, 지방지와 농업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人民日報 http://www.people.com.cn/
 - 中國青年報 http://www.cyd.com.cn/node/index.htm
 - 中國農民新聞 http://www.farmer.com.cn/
 - 京華時報 http://paper.people.com.cn/jhsb/html/2007-12/11/node_105.htm
 - 經濟觀察報 http://www.eobserver.com.cn/
 - 中國畜牧報 http://www.clanews.com/
 - 經濟日報 http://www.economicdaily.com.cn/no1/
 - 新華社 http://www.xinhua.org/
 - 安徽日報 http://www.ahrb.com.cn/
 - 光明日報 http://www.gmw.cn/
 - 經濟參考報 http://jjckb.xinhuanet.com/
 - 中國食品報 http://www.cnfoodnews.cncom.net/
 - 中國鄉鎮企業報 http://www.c-te.com/
 - 中國經濟時報 http://www.jjxww.com/
 - 中國食品質量報 http://www.cfqn.com.cn/

- 中國財經報 http://www.fec.com.cn/
- 河北日報 http://www.hebeidaily.com.cn/
- 四川日報 http://www.sichuandaily.com.cn/
- 江蘇經濟報 http://www.xhby.net/xhby/node/2007-11/24/node_59.htm
- 浙江日報 http://zjdaily.zjol.com.cn/
- 河南日報 http://www.hnby.com.cn/
- 海南日報 http://hnrb.hinews.cn/
- 甘肅日報 http://www.gansudaily.com.cn/
- 山西日報 http://www.daynews.com.cn/
- 江西日報 http://www.daynews.com.cn/
- 湖北日報 http://www.cnhubei.com/
- 湖南日報 http://www.hnol.net/
- 南方日報 http://www.nanfangdaily.com.cn/
- 黑龍江日報 http://www.nanfangdaily.com.cn/
- 北京晚報 http://www.ben.com.cn/
- 南方周末 http://www.southcn.com/
- 陝西日報 http://www.sxdaily.com.cn/
- 遼寧經濟日報 http://www.lnjjrb.com.cn/
- 寧夏日報 http://www.nxnet.net/
- 福建日報 http://www.fjdaily.com/
- 21世紀經濟報道 http://www.nanfangdaily.com.cn/
- 云南日報 http://www.yndaily.com.cn/
- 遼寧日報 http://www.lndaily.com.cn/
- 廣州日報 http://gzdaily.dayoo.com/
- 廣西日報 http://www.gxnews.com.cn/
- 貴州日報 http://www.gog.com.cn/gzrb/
- 經濟信息日報(貴州) http://www.gog.com.cn/jjxxsb/

1.3. 《농업・농촌경제 동향》

- 국내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 혹은 분야를 위주로 중국 통계당국의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 유통, 가격, 소비, 무역 동향 등 중국 농업경 제 동향과 농가인구, 농민소득, 도농간 소득격차, 농촌 소비, 농촌 산업구 조, 향진기업 경제 동향 등 농촌경제 동향을 분석함. 특히 지역별(성별)로 생산이 특화되어 있는 중국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동향뿐만 아니 라 성(省)별 동향도 분석하여 소개함.
- '농업·농촌경제 동향' 분석자료는 일차적으로 월별 자료를 연구원 인터 넷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분산함. 그리고 분기별로 발행하는 『중국농업동향』의 '농업·농촌경제 동향' 부분에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 분석자료를 수록하여 오프라인으로 분산함. 농업·농촌경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중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 中國農業部 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
 - 全國成本調查 http://www.npcs.gov.cn/web/index.asp
 - 中國價格信息網 http://www.chinaprice.gov.cn/
 - 海關統計咨詢網 http://www.hgtj.cn/customsstat/
 - 中國糧食信息網 http://www.grain.gov.cn/
 - 中國食品商務網 http://www.21food.cn/

1.4. 《농정연구 이슈》

○ 중국 농업정보의 잠재적인 수요자는 정책담당자, 연구자, 산업계, 소비자 등으로 이들 가운데 연구자들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연구자들 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중국농업정보와 분기별로 발행하는 『중국농업동향』에 대한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들 연구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연구기관으로서 본 연구원의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중국내 주요 농정연구기관의 농정연구 동 향을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소개함. 동 시에 분기별로 발행하는 『중국농업동향』의 '농정연구 이슈'에도 수록하 여 오프라인으로 분산함. 주요 농정연구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http://www.drc.gov.cn/
 - 農業部 農村經濟研究中心 http://www.rcre.cn/
 - 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 http://rdi.cass.cn/
 - 中國社會科學院 人口與勞動經濟研究所 http://iple.cass.cn/
 - 中國社會科學院 經濟研究所 http://ie.cass.cn/
 - 中國農業科學院 農業經濟與發展研究所 http://www.iae.org.cn/
 - 北京大學 中國經濟研究中心 http://www.ccer.edu.cn/cn/

1.5. 《정책자료》

-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주요 법률, 행정법규, 규칙 등의 자료와 중국 농업관련 국내외 보고서, 논문 등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를 번역 소개함.
- 이들 자료는 일차적으로 연구원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분산하고, 분기별로 발행하는 『중국농업동향』의 '정책자료'에도 수록하 여 오프라인으로 분산함.

1.6. 《농업통계》

○ 농업·농촌경제와 관련된 전국 및 성(省)별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 사이트와 분기별로 발행하는 『중국농업동향』의 '농업통계'에 수록하여 분산함.

○ 장기적으로 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중국 농업부 정보센터(信息中心)와 MOU를 체결하여 제공받고 있는 중국 도매시장 가격데이터와 연계하여 중국 농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2. 추진 체계

- 중국 농업정보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 중국 농업동향 관련 텍스트 자료 및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본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농업정보'사이트를 개설하고 자료를 중국 농업정보 수요자들에게 분산함.
 - 현재 본 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농업정보' 메뉴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부정기적이고 부분적으로 중국 농업정보를 분산하고 있음.
 - 또한 중국 농업관련 정보가 '세계농업정보'의 하위메뉴인 '토픽', '농업개황', '농업정책', '농업협상', '세계농업뉴스' 등에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본 연구원 중국농업팀과 중국사무소가 수집·분석한 중국 농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산을 위해 본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농업정보' 메뉴의 하위 메뉴로 '중국농업정보'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중국 농업 정보의 관리 및 분산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임.
- 본 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중국 농업동향 파악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국사무소의 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최신 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분산함.

- 본 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상시적으로 '농업정책 브리핑'과 '농업동 향 스크랩' 자료를 생산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연구원 인터넷 홈 페이지 의 '중국농업정보'를 통해 웹진(Webzine) 형식으로 분산함.
- 이외에도 중국사무소의 자체 연구 및 조사자료, 중국사무소 주최 세미 나 등 제반 활동 결과물을 연구원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와 분기별 『중국농업동향』보고서를 통해 중국농업정보 수요자들에게 분산함.
- 중국 농업관련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 산업계, 소비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 농업정보의 수집, 관리, 분산에 대한 자문을 구함. 이와 함께 국내외 중국 농업관련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이를 적극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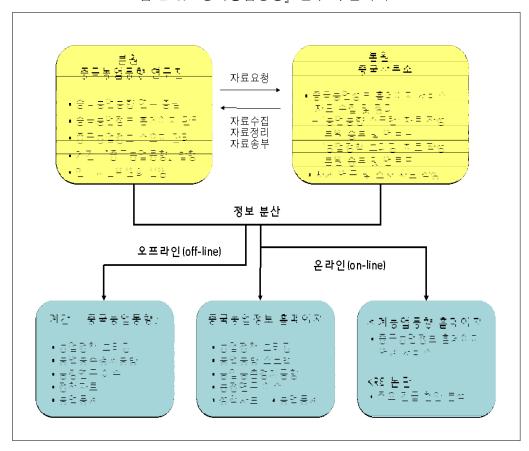


그림 2-3.『중국농업동향』연구 추진체계도

- 본 연구를 통해 분기별로 발행할 예정인『중국농업동향』보고서의 체제 와 주요 수록 내용을 시범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보완·보충하여 2008년 부터 연구관련사업으로 추진함.
 -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 예정인 '중국농업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농업정책 브리핑', '농업동향 스크랩',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정연구 이슈', '정책자료', '농업통계' 자료를 분산하고 이들자료를 보완 및 보충하여『중국농업동향』보고서를 발행함.
 - 『중국농업동향』보고서는 1년에 4회,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월)호로 발행함.

$_{\text{M}}3_{\text{ }\text{3}}$

『중국농업동향』(시안)

KREI 중국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07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59-6110

< 목 차 >

1. 농업정책 브리핑

<개요> / 1

- 1. 중국 농업·농촌문제와 '중앙 1호 문건' / 5
- 2. 2007년 농업부문 재정투자 / 21
- 3. 『물권법』 제정과 농촌 토지소유제도 / 31
- 4. 『농민전업합작사법』시행과 중국의 농민협동조직 / 42
- 5. 도농 통합발전 신특구 정책 / 55
- 6. 2007년 주요 농업법규 및 규칙(規章) / 59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 1. 2006년 중국 농업·농촌경제 동향 / 64
- 2. 농산물 가격 동향 / 67
- 3. 농산물 무역 동향 / 69
- 4. 농민소득 동향 / 73

Ⅲ. 정책자료

- 1. 농업·농촌경제 관련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 / 74
- 2. 『물권법』 농업관련 부분 / 82
- 3. 『농민전업합작사법』 전문 / 91
- 4. 《중국의 식품 품질안전 현황》 요약 / 102

IV. 농업통계

- 1. 2007년 1~9월 농업총생산액 / 106
- 2. 2007년 1~9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 107
- 3. 2007년 1~9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지출 / 108
- 4. 중국의 농업재정 지출, 1978~2005년 / 109

│. 농업정책 브리핑

< 개 요 >

□ 중국 농업·농촌문제와 '중앙 1호 문건'

- 2006~2010년 기간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이 하 '11.5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향후 5년 동안의 주요 농정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반영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06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하나인 농업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
- 이에 앞서 후진타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농민소득 증대와 농업 생산능력(capacity) 제고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여 농업·농촌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중앙 1호 문건' 이 발표된 배경과 문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5년 동안의 주요 농정방향으로 제시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실천과제를 소개함.

□ 2007년 농업부문 재정투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농업재정의 투자방향 제시, 투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투자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7 년 농업재정 투자지침(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을 발표하였음.

- 2007년 농업부문 재정투자의 방향 및 세부 투자계획은 '11.5계획'의 농업· 농촌부문 계획과 2006년 '중앙 1호 문건' 그리고 '11.5계획'을 토대로 농업 부(2007.8.3), 국가발전개혁위원회(2007.6.9) 명의로 각각 하달한 '전국 농업· 농촌경제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全國農業和農村經濟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2006~2010年)', '전국 농촌경제사회발전 11.5계획에 관한 통지'(國家發展改革委關于印發全國農村經濟社會發展"11.5"規劃的通知; 發改農經 [2007]1253호)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에 집중되어 있음.
- 2007년도 중앙정부의 농업부문 재정투자 계획을 개괄하고 총 41개 중점 투자항목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시설 투자(15개 항목), 농촌지역 생활기초시설 투자(9개 항목), 생태환경보호 투자(7개 항목), 농촌 사회사업 투자(10개 항목)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투자항목의 내용과 규모를 소개함. 또한 중국의 농업재정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

□ 『물권법』 제정과 농촌 토지소유제도

-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남순강화 南巡講話'(1992.1.18~2.23)와 중국 공산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1992.10.12~18)를 계기로 1993년 수정헌법(제15조)에서 계획경제체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명문화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입법체계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물권법』 제정이 추진되었음.
- 『물권법』은 재산권의 보호와 이용 권리를 규정하는 민법의 중요 구성 법률임. 그러나 사적재산권의 인정이 공유제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이념과 배치된다는 이념적 논란 때문에 법률 제정은 13년에 걸친 심의과정을 거쳐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2007.3.5~16)에서 통과되어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물권법』은 총칙(1편), 소유권(2편), 용익물권(3편), 담보물권(4편), 점유(5편) 등 총 5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9장 247조로 이루어져 있음.
- 중국의 민사법률 체계와 『물권법』의 제정 과정 및 배경, 법률의 농업관련 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 제정이 농촌 토지소유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고찰함.

□ 『농민전업합작사법』시행과 중국의 농민협동조직

- 우리의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농민전업합작사(農民專業合作社)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농민전업합작사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7호)이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우리의 『농업협동조합법』에 해당하는 『농민전업합작사법』은 총칙(제1장), 설립 및 등기(제2장), 조합원(제3장), 조직기구(제4장), 재무관리(제5장), 합 병, 분할, 해산 및 청산(제6장), 지원정책(제7장), 법률책임(제8장), 부칙(제9 장) 등 9장 56조로 구성됨.
- 『농민전업합작사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농민협동조 직의 발전 현황과 특징, 법률제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봄.

□ 도농 통합발전 신특구(新特區) 정책

- 2007년 6월 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경시와 성도시에 전국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 건설에 관한 통지'(國家發展改革委關于批準 重慶市和成都市設立全國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驗區的通知; 發改經體 [2007]1248호)를 하달하여 중경직할시와 사천성 성도시를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로 선정하였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1980년 광동성 심천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커다란

성과를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 정책을 계승한 신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정책은 개혁과제를 선정한 후 신특구로 불리는 국가 종합개혁시범지구(國家綜合改革試驗區)를 선정하여 일련의 개혁조치를 시험하고이를 주변지역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임.

- 중경직할시와 성도시로 선정된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는 2005년 6월 상해 포동신특구(浦東新區), 2006년 5월 천진 빈해신특구(濱海新區)에 이어 3번째로 지정된 신특구임.
- 도농 통합발전 신특구 정책의 추진 배경과 중경시 및 성도시 선정 배경을 살펴보고,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고찰함.

□ 2007년 주요 농업법규 및 규칙(規章)

○ 중국은 2007년 한 해 동안 국무원을 비롯해 농업부, 상무부 등 정부부처 명의 농업법규 26건, 농업부문 규칙 137건, 지방법규 58건을 발표하였음. 이가운데 일부를 요약 소개함.

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중국 농업·농촌문제와 '중앙 1호 문건'

1.1. 개요

- □ 중국 공산당과 정부(국무원)는 2004년 농민소득 증대, 2005년 농업 생산능력 제고, 2006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이어 올해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인 농업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
- 1호 문건은 의미 그대로 매년 가장 먼저 제정된 문건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특히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호 문건과 국무원의 1호 문건은 각각 당과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최우선 정책과제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음.
-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당과 정부 모두 당면한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978.12.18~22; 이하 '3중 전회'라 칭함) 이후 2007년까지 29년 동안농업·농촌문제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된 '중앙 1호 문건'은 모두 9차례발표되었음.
- '3중 전회'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단독 명의 혹은 중국 공산당 중 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공동 명의로 발표된 문건 가운데 농업·농촌 관련 문건 은 약 50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9건이 '중앙 1호 문건'으로 발표되었음.

○ 총 9건의 '중앙 1호 문건' 가운데 5건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2~1986년 동안 5년 연속, 나머지 4건은 2004~2007년 동안 4년 연속 발표되었음. 이 가운데 1982~1984년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1985~1986년과 2004~2007년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공동 명의로 작성되었음.

1.2. 1982~1986년'중앙 1호 문건'

- □ 중국의 농업개혁은 일반적으로 분권화(decentralization) 단계(1978~1983)
 → 시장화(marketization) 단계(1984~1992) → 시장화 진전 단계(1992년 이후)의 3단계로 구분함.
- 1982~1986년 까지 5년 연속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은 분권화 단계와 시장 화 단계의 농업개혁을 당과 정부 차원에서 승인·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 지향적(market-oriented)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
- □ 중국 농업개혁의 분권화 단계는 1956년 이후 금지와 제한적 허용을 반복하며 명맥을 유지했던 생산책임제를 전면 허용하고,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를 더욱 진전시켜 농가경영시스템을 확립하는 시기임. 1982~1984년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은 농업경영시스템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를 승인·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1982년 '중앙 1호 문건'은 1978년 말 이후 전국적으로 인민공사의 생산대 (生產隊)에서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던 다양한 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를 농업협동화 이전의 농가경영제와 구별되는 사회주의 형식의 생산책임제로 규정하여 농업경영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1983년 '중앙 1호 문건'도 '3중 전회'이후 다양한 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가 농촌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생산량과 연계된 농 업생산책임제(包產制)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음.

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1 중국 농업생산책임제의 주요 형식 및 내용

구분	주요 형식	주요 내용
농작업 도급제 (包工制)	包工定額計酬	 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 실시 생산대가 작업조(개인)에게 농작업을 청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완성시, 정해진 노동점수를 부여하고 보수기준에 따라 노동보수 지불 임무 초과시 노동점수 가산, 임무 미달시 삭감
	專項包產制 (=專業承包, 聯產計酬)	 ・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 실시 ・생산대가 생산항목의 특징과 규모, 개별사원의 보유기술 특성과 노동력의 질에 따라 專業隊(組, 戶, 工) 조직 ・이들에게 전문 생산항목(특정작물 생산, 가축사육 등)의생산임무를 청부하고, 생산 완료 후 생산량과 연계하여노동점수 부여하고 보수기준에 따라 노동보수 지불
생산량 도급제 (包產制)	包產到組 (=聯產到組)	 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 실시 생산대가 생산의 필요성에 따라 개별 사원의 노동력의 질을 감안하여 작업조를 조직하고 이들 작업조에 일정 면적의 경지, 역축, 일부 농기구 고정 분배 생산대는 작업조에 농작업, 생산량, 생산비용을 함께 묶어 청부하고 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량 지표와 연계하여 노동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 지불 ·지표 를 초과한 경우 노동점수 가산, 미달한 경우 삭감
	包產到勞 (=聯產到勞)	 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 실시 청부하는 방식과 노동보수 지불 방식은 包產到組와 동일하지만 청부대상이 개인 노동 생산항목 전부 또는 부분적인 항목만 청부
	包產到戶(=聯產到戶)	・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 실시 ・청부하는 방식과 노동보수 지불 방식은 包產到組와 동 일하지만 청부대상이 개인 농가
경 영 도급제 (包干制)	包干到組	 생산대의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 방식 폐기 생산대가 작업조에게 일정면적의 농지를 분배한 후 생산 및 경영을 청부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농작업, 생산량, 생산비용 지표를 부과하지 않고 생산량에 따라 노동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폐기 작업조는 생산 완료 후 우선적으로 국가수매에 응한후 생산대에 공공축적기금과 여러 항목의 비용을 납부하고 남은 잉여생산물이나 수입을 자유 처분
	包干到户	 생산대의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 방식 폐기 · 청부하는 방식과 노동보수 지불 방식은 包干到組와 동일하지만 청부대상이 개별 농가(농지는 농가의 식구 수혹은 노동력의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 ・분배받은 농지, 일부 대형농기구와 수리시설 등은 여전히 집단소유이며 농가 책임경영 및 독립채산제 실시

자료: 王貴宸, 魏道南, 秦其明. 1984. 『農業生產責任制的建立和發展』. 河北人民出版社. pp. 5~10을 토대로 필자 작성

- '3중 전회' 이후 농업생산책임제의 발전과정은 도급 내용에 있어서는 농작업 도급제(包工制)에서 생산량 도급제(包產制)로, 더 나아가 경영 도급제(包干 制)로 발전했음. 그리고 수급(受給) 주체는 개혁 이전에는 주로 집단(작업 조)이었으나 개혁 이후 점차 개별농가로 세분화 되었음(표1 참조).
 - 개혁초기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농업생산책임제는 정액포공(定额包工)과 연산도조(聯產到組) 형식이었으며 이 중 연산도조 형식은 점차 작업조에 생산량 지표를 청부하고 노동보수도 생산량과 연계하여 계산하는 포산도조 (包產到組) 형식으로 발전하였음.
 - 1980년 초 전국 생산대의 55.7%가 정액포공 형식을 도입하였으며, 24.9%의 생산대가 포산도조 형식을 도입하였음. 또한 1980년 11월 초 전국적으로 15%의 생산대에서 포산도호 형식을 실시하였으며, 1981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32%와 45%로 증가하였음.
 - 1981년 후반 포산도호 형식은 점차 포간도호(包干到户) 형식으로 대체되었으며 포간도호나 포산도호를 실시하고 있는 생산대는 1982년 12월 78.7%에서 1983년 12월 98.3%로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전체 농민의 94.5%를 아우르는 97.8%의 생산대에서 포간도호를 실시하였음. 1983년 이후 중국 농촌에서는 포간도호가 지배적인 생산책임제 형식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포간도호는 농가단위 생산책임제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로 불리며 중국 농촌의 지배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1984년 이후 최근까지 당 문건과 국무원의 지침 혹은 일부 법률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적인 지위도 보장하였음.
 - 1984년 '중앙 1호 문건'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력향상과 집약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시 3~5년에 불과하던 토지도 급기간(土地承包期)을 15년으로 연장하였음.
 - 각종 당 문건과 국무원의 지침 혹은 일부 법률에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주도적인 지위를 공식화하고 법률적인 지위도 보장했지만 제도와 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 법률은 존재하지 않다가, 2003년 3월 『농촌토지도급법 農村土地承包法』을 제정하여 최종적으로 법제화하였음.

- □ 중국 농업개혁의 시장화 단계(1985~1992)는 전통적 계획경제체제하의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제도 개혁을 통해 농업부문에서 시장경제 영역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시기임. 1985년 '중앙 1호 문건'은 1953년 이후 3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농산물의 계획수매(統購) 및 할당수매(派購)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농산물 유통체제를 국영관리 및 계획수매·계획판매(統購統銷) 체제에서 시장유통체제로 전환하였음.
- 1985년 농산물 유통제도 개혁 이전(1953~1984) 중국의 농산물 유통은 정부의 통일된 가격결정하에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와 국영기업의 독점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계획수매·계획판매를 기본으로 하였음. 농산물의 정부수매시에는 농산물을 1류, 2류, 3류로 구분하고 각각 계획수매, 할당수매, 협의수매(議購)를 실시하였음.
 - 1953년 11월 가장 먼저 식량과 유지작물에 대해서 계획수매·계획판매를 실시한데 이어 1954년 9월에 면화에 대해서도 계획수매를 실시하였음. 또한 1954년에 돼지 할당수매제도를 처음 실시하고, 1957년 8월 할당수매 농산물의 품목을 확정하였음. 계획수매와 할당수매에 해당되지 않는 닭, 오리, 거위, 수산물, 과일류 등 농수축산물은 국가 주도의 자유시장을 통해 협의수매(시장수매) 하도록 하였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979년부터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계획수매 및 할당수매 농산물의 종류를 줄인데 이어 1985년에 '중앙 1호문 건'을 통해 농산물의 계획수매 및 할당수매 제도를 최종적으로 폐지하였음.
 - '3중 전회'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은 1979년 3월부터 식량, 면화, 유지작물, 돼지 등을 포함한 18개 품목의 수매가격을 평균 24.8%(식량 20%, 유지작물 25%, 면화 15%) 인상하였음. 또한 11월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류, 채소, 수산물, 우유, 식용유 등 8개 부식품 가격을 인상하여 1978년에 비해 1982년 전국 농산물 수매가격은 41.6% 인상되었음.
 - 수산물의 할당수매 비율을 1979년 60%로 축소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말까지 계획수매와 할당수매 품목을 180여 개에서 38개(한약재 24개 품목 포함)로 축소하였음. 정부의 수매 총액 가운데 계획·할당 수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8년 84.7%에서 1984년 39.4%로 감소하였음.

- 1985년 계획·할당수매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계약수매와 시장수매를 병행하였음. 이 가운데 식량은 계약수매(合同定購)로 전환하고 수매가격은 계획수매가격 30%, 시장조절가격 70%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雙軌制)을 실시하였음. 면화와 수산물은 각각 계약수매와 시장수매로 전환하였으며 돼지와 가금류, 채소는 1985년 5월 북경, 천진, 상해 등 대도시 지역의 주요 채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수매로 전환하였음.

1.3. 2004~2007년 중앙 1호 문건 발표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삼농문제의 부상과'중앙 1호 문건'

- □ 중국의 제 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출범한 중국 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2002.11.8~14)에서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등 생활수준 영위) 건설 목표를 제시하고,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해결과제로 삼농문제를 제기하였음.
- 중국의 농업문제는 이중경제구조에서 과잉 농촌노동력의 존재와 영세분산적 인 농업경영 규모 및 전통적 기술체계에 의존하는 소농민 경영으로 인한 농 업생산성의 정체가 핵심적인 문제임.
 - 농업개혁으로 1980년대 초반 연평균 7%에 달하던 농업생산 증가율은 개혁 효과가 소진된 1980년대 중반 이후 3~4%로 감소하였음. 특히 작부체계의 변화와 농지감소 등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식량생산이 감소하여 연평균 식량생산 증가율이 -4.1%에 달했음.
 - 경제성장과 함께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인구의 1/4에 가까운 13억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커다란 인구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 서는 장기적으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식량안보의 확보가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였음.
 - 2005년 현재 중국 전체인구의 57%인 농촌인구 7억 5천만 명 가운데 약 1

역 5천만 명으로 추산(농업부, 2004)되는 농촌 과잉인구는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호적제도(戶口制度)와 향진기업의 제한된 흡수 능력 그리고 낮은 도시화율(약 30%)은 여전히 농촌 과잉인구 문제 해결을 제약하고 있음. 또한 최근 들어 청장년층 남성 노동력의 도시 유출이 증가하면서 농번기 인력난이 심각하고 노동력의 노 령화와 부녀화로 노동력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작포기로 인한 농경지의 황폐화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 세금 및 각종 비용 부담, 취약한 사회보장체계(의료보장체계, 양로보험 등),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 열악한 생활 기반시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 차 확대 및 농촌빈곤 등은 중국의 주요한 농민문제와 농촌문제임.
 -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향(鄕)·진(鎭) 정부가 지역 농민들에게 세금 이외에도 각종 명목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음. 중국 정부가 농촌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2006년 농업세를 전면 폐지했지만 농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향·진 등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1985년 이후 국가재정에 의한 농촌교육 지출을 중지하여 농촌지역의 의무교육은 농민들의 부담하에 이루어져 도시와 비교할 때 심각한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양로보험 없이 자녀의 가정양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보장체계는 더욱 취약한 상태임.
 -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었음. 최근 중국의 지니계수는 약 0.46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각하며 이중 도시, 농촌, 도농간 지니계수는 각각 0.34, 0.37, 0.46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중국의 지역간 경제격차 확대의 중요한 요인임(樓繼偉, 2006).
 - 2005년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1990~2005년 도시주민의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7.7%인데 반해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은 4.8%로 도농간 소득비율이 1990년의 2.20에서 2005년 3.22로 증가하여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이밖에도 경제개발로 인한 토지수요 급증으로 농지의 비농업용지로의 전환 이 가속화되어 경지면적이 감소하고(1998년 19.5억 무(畝)¹→2003년 18.5

억 무), 이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의 생활보장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중국 전체 농촌인구의 약 13.7%인 1.3억 만 명의 농민 들이 자신의 토지가 없고, 앞으로 도시화 및 공업화의 진전으로 그 비율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宋斌文, 2005.11.28).

- □ 후진타오 정부는 농업·농촌·농민문제, 즉 삼농문제를 중국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집정이데올로기인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에 입각하여 삼농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제시하였음.
-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일관되게 유지했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대체하여 ①빈부격차와 지역격차 완화, ②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③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을 핵심내용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집정이데 올로기로 제시하였음.
- 집권 1기(2002.11~2007.10) 동안 후진타오 정부가 2004~2007년 까지 4년 연속 농업·농촌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 제 창한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하여 당면한 농업·농촌문제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나. 2004~2007년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삼농문제 가운데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후진타오 정부가 설정한 조화사회(和諧社會)와 '샤오캉사회' 건설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04년 '중앙 1호 문건'은 농민소득²) 증대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1) 1}무(畝)≒0.067ha≒200평.

²⁾ 중국은 농가소득 개념보다는 주로 농민 1인당 소득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개혁개방 초기, 특히 1980~1985년 기간에 도시개혁에 앞서 농촌개혁이 선행되어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은 도시주민을 상회하였고 도농간 소득격차 또한 축소되었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1988년 1.95에서 2005년에는 3.22로 확대되었음(표2 참조).
- 또한 농촌주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농민들에게 세금 외에 각종 비용을 부과하여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개발목적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위법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무토지 농민들이 발생하고 이들의 집단적 저항(群體性抗議)이 증가하여 농촌과 전체사회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표 2 중국의 도시 및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과 격차, 1978~2005년

 연 도	1인당 주'	민 소득(200	소득격차			
선 도 	농촌(A)	성장율(%)	도시(B)	성장율(%)	절대(B-A)	상대(B/A)
1978	521.2	-	1,732.2	-	1,211.0	3.32
1980	724.4	16.6	2,198.6	9.7	1,474.2	3.03
1985	1,401.8	7.8	2,778.0	1.1	1,376.2	1.98
1990	1,622.1	1.8	3,427.9	8.5	1,805.8	2.11
1995	1,999.2	5.3	5,019.2	4.9	3,020.0	2.51
2000	2,519.6	2.1	6,628.3	6.4	4,108.7	2.63
2001	2,625.4	4.2	7,191.7	8.5	4,566.3	2.74
2002	2,751.4	4.8	8,155.4	13.4	5,404.0	2.96
2003	2,869.8	4.3	8,889.4	9.0	6,019.7	3.10
2004	3,064.9	6.8	9,573.9	7.7	6,509.0	3.12
2005	3,254.9	6.2	10,493.0	9.6	7,238.1	3.22

주: 농촌주민 소득은 순소득, 도시주민 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나타냄.

斗豆: 中國統計出版社.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中國統計出版社.

-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농민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중앙 1호 문건'에서 농민소득 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2000년부터 농촌세제 개혁을 추진하여 2006년에는 농업세를 완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2004년 '중앙 1호 문건'은 농민소득 증대, 특히 식량주산지 농민의 소득증 대와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①식량주산지의 식량산업 발전을 지원하여 식량생산 농민의 소득증대 촉진, ②농업구조조정을 통한 농업 내부의 소득증대 잠재력 발굴, ③농촌지역 2, 3차 산업 발전을 통한 소득원 확대, ④농민들의 도시취업 환경 개선으로 노무수입 증대, ⑤시장체계를 활용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 ⑥농촌 기초시설 투자 증대, ⑦농촌 토지제도 등 농촌개혁의 심화, ⑧농촌 빈곤지역 빈곤퇴치, ⑨중국 공산당의 지도 역할 및 정책 집행능력 강화 등 9가지의 정책추진 방향과 22가지의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Ⅲ. 정책자료 참조).
- □ 2005년 '중앙 1호 문건'은 농업의 생산능력(capacity) 제고를 최우선 정책과 제로 제시하였음. 이는 작부체계의 변화와 농지감소 등으로 1999~2003년까지 5년 연속 식량생산이 감소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비록 2004년에 증산추세로 전환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낙관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 중국의 식량생산은 1998년 51,229.5만 톤으로 신중국 건국 이래 최대를 기록한 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경지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특히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토지의 비농업수요 증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퇴경환림환초(退耕還林還草) 정책 등으로 경지면적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생산량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 1998~2003년 동안 중국의 경지면적은 19.5억 무(1.3억 ha)에서 18.5억 무 (1.2억 ha)로 9,363만 무(6.2백만 ha)의 경지면적이 감소하여 연평균 1,872만 무(1.3백만 ha)씩 감소하였음. 2002년과 2003년 퇴경환림환초 면적은 각각 142.6천 ha와 223.7천 ha로 각 연도 전체 감소면적의 84%와 88%를 차지하였음(陳百明, 周小萍, 2005).

- 경제성장과 함께 식품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 식량작물 위주의 단일 한 식부체계가 식량작물과 경제작물, 원예작물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상대적 으로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도 식량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임.

표 3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작부체계 변화 추이, 1978~2004년

	197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파종면적	150,105	146,381	143,626	148,363	149,879	156,300	153,553
합계(천h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량작물	120,587	117,234	108,845	113,466	110,060	108,463	101,606
7075	(80.3)	(80.1)	(75.8)	(76.5)	(73.4)	(69.4)	(66.2)
곡물	n.a.	n.a.	n.a.	n.a.	89,310	85,264	79,350
コ セ	(n.a.)	(n.a.)	(n.a.)	(n.a.)	(59.6)	(54.6)	(51.7)
·쌀	34,421	33,879	32,070	33,064	30,744	29,962	28,379
- 연	(22.9)	(23.1)	(22.3)	(22.3)	(20.5)	(19.2)	(18.5)
·밀	29,183	28,844	29,218	30,753	28,860	26,653	21,626
· ਦ	(19.4)	(19.7)	(20.3)	(20.7)	(19.3)	(17.1)	(14.1)
·옥수수	19,961	20,087	17,694	21,401	22,776	23,056	25,446
· - + + +	(13.3)	(13.7)	(12.3)	(14.4)	(15.2)	(14.8)	(16.6)
두류	n.a.	n.a.	n.a.	n.a.	11,232	12,660	12,799
TT	(n.a.)	(n.a.)	(n.a.)	(n.a.)	(7.5)	(8.1)	(8.3)
서류	11,796	10,153	8,572	9,121	9,519	10,538	9,457
^\T	(7.9)	(6.9)	(6.0)	(6.1)	(6.4)	(6.7)	(6.2)
경제작물	13,512	14,960	21,023	20,269	22,204	22,669	23,305
경제작물	(9.0)	(10.2)	(14.6)	(13.7)	(14.8)	(14.5)	(15.2)
o = zl □	6,222	7,929	11,800	10,900	13,101	15,400	14,431
유류작물	(4.1)	(5.4)	(8.2)	(7.3)	(8.7)	(9.9)	(9.4)
머귀	4,867	4,920	5,141	5,588	5,422	4,041	5,693
면화	(3.2)	(3.4)	(3.6)	(3.8)	(3.6)	(2.6)	(3.7)
əl 人	3,331	3,163	4,753	6,338	9,515	15,237	17,560
채소	(2.2)	(2.2)	(3.3)	(4.3)	(6.3)	(9.7)	(11.4)
عا (ما	1,657	1,783	2,736	5,179	8,098	8,932	9,768
과일	(1.1)	(1.2)	(1.9)	(3.5)	(5.4)	(5.7)	(6.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파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斗豆: 全炯振. 2007. 『中國農業全要素生産率變化及其收斂性分析: 基于非參數DEA與參數SFA方法的實證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院博士學位論文. р.38.

- 식량작물의 파종면적은 1978년 120,587천 ha에서 2004년 101,606천 ha로 감소했고 전체 파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3%에서 66.2%로 감소했음. 반면 경제작물의 파종면적은 동기간 13,512천 ha에서 23,305천 ha로 증가했고 그 비중도 9.0%에서 15.2%로 증가했음. 채소는 3,331천 ha(2.2%)에서 17,560천 ha(11.4%)로 크게 증가했음(표3 참조).
- 2005년 '중앙 1호 문건'은 식량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①농업보조·지원정책의 보완 및 강화를 통해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 제고, ②엄격한 농지 보호관리 제도 시행, 농지의 비옥도 향상, ③수리관개시설 완비,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 ④농업기술개발, ⑤농업 기초시설투자 확대, ⑥농업생산구조의 조정 및 농업의 산업화 경영 촉진, ⑦농업투 융자체계 개선, ⑧농업노동력의 질 제고, ⑨중국 공산당의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지도 역할 강화 등 9가지의 정책추진 방향과 27가지의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Ⅲ. 정책자료 참조).
- □ 2006~2010년 동안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주요 농정방향으로 설정한 '11.5계획'을 반영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06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데 이어 올해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하나인 농업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
- 사회주의 신농촌(社會主義新農村) 개념의 유래
 - 사회주의 신농촌이라는 표현은 이미 1950, 60년대 중국 공산당 문건에도 등장하지만 주로 정치적인 구호로서 발전의 방향을 암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 개혁개방 이후 1980, 90년대에는 인민공사체제가 해체된 후 농업경영제도의 개혁으로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
 -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998.10.12~14)에서 통과된 '농업·농촌사업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의 결정(中共中央關于農業和農村工作若干重大問題的決定)'은 경제, 정치, 문화의 3개 방면에서

2010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를 제시하였음.

- 2002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과 관련한 선언이나 개념 등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전면적인 샤 오캉(小康)사회 건설이라는 거시적인 사회발전 목표가 제시되었음.
-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03.10.11~14)에서 도농 통합발전 목표가 제시된 후 제4차 전체회의(2004.9.16~19)에서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以工補農), 도시가 농촌을 인도(以城帶農)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제5차 전체회의(2005.10.8~11)에서 통과된 '11.5계획'에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를 명시하였음.
- 기존에 언급된 사회주의 신농촌 개념이 정치적인 구호로서 발전 방향만을 함축했다면 새로운 사회주의 신농촌 개념은 협의의 농촌 지역개발을 포함 하여 '11.5계획' 기간 동안 더 나아가 중국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음.
- 2006년 2월 22일 개최된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국무원 중앙재정영도소조판 공실(中央財政領導小組辦公室) 천시원(陳錫文) 부주임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정책과제로 제시한 배경, 건설 목표와 임무, 원칙 등을 소개하였음.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의 출현 배경

- ① 농업의 기초적 지위 불안정:경제사회 발전 및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상응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2005년 식량생산량은 4.84억 톤으로 과거 최고 생산량과 3,000만 톤의 차이가 있으며,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경지와 수자원 부족문제가 농업발전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부상
- 농업에 대한 투자증대로 농업생산조건 개선, 농업기술수준 제고, 토지생산성 증대 필요
- ② 도 농 간 격 차 의 지 속 적 확 대
 - 2005년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은 3,255위안인데 반해 도시 주민은 10,493위안으로 소득비율이 1:3.22로 나타남.
 - 농촌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 위생, 문화 방면에서도 도시와 격차가 크며 이는 농민들의 자질 제고에 중대한 제약요인임.

- ③ 중국 경제가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以工補農), 도시가 농촌을 인도(以城帶農)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
 - 10.5계획 기간(2000~2005)에 중국의 GDP, 재정수입,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배로 증가하였음.
 - 2000년 GDP 8.95만 억 위안, 재정수입 1.34만억 위안, 고정자산투자 3.3만억 위안에서 2005년에는 각각 18.2만억 위안, 3.16만억위안, 8.86만억 위안으로 증가
- ④ 내수 확대의 필요성 증대
 - 중국 전체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소득수준이 낮 아 실질구매력이 낮고 이로 인해 국내 내수확대 제약
 - 2005년도 전체 소매액 가운데 현(縣)과 현 이하에서 실현된 부분 은 전체의 32.9%에 불과
- ⑤ 조화사회 건설, 사회적 평등 실현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의 성과를 전체 국민이 공유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5대 목적

- 농업생산력 발전(生產發展), 농민 생활수준 향상(生活寬裕), 농촌 사회간접자본시설 개선(鄉風文明), 농촌사회사업 발전(村容整潔), 농촌 기층조직의 민주화(管理民主) -->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
- 결국 사회주의 신농촌은 위의 5가지 목적이 달성된 농촌을 지칭하는 것으로 발전 '방향'이자 구체적 '목표'를 함축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5대 원칙

- ① 농촌경제 발전 원칙: 지방정부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농 촌 건설을 추진할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늘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장기적인 추진이 불가능. 공업과 도시 가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는 방식의 농업투융자 체계 확립
- ② 헌법에 규정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토대위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 ③ 농민들의 농업생산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
- ④ 과학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 수립,지역여건에 적합한 계획 수립, 타지역 경험의 맹목적인 답습 지양
- ⑤ 농민들의 근면 자조의 정신에 의거하고 중국 공산당과 각 부문의 적극성을 견인하며 국가의 지원과 사회 각계 각층의 역량 총동원

-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2006.3.4~14)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11.5계획'은 총 14편 48장으로 이루어지며, 제2편에서 농업현대화(4장), 농민소득 증대(5장), 농촌 생활조건 개선(6장), 농민 교육 및 훈련(7장), 농업부문 재정투자 확대(8장), 농촌개혁 심화(9장) 등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2006년 '중앙 1호 문건'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을 위해 ①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②농업현대화, ③농민소득 증대, ④농촌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⑤농촌 사회사업의 발전, ⑥농촌개혁의 심화, ⑦농촌 기층조직의 민주화, ⑧중국 공산당의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지도 역할 강화, ⑨전사회적 관심과 지원, 참여 유도 등 9가지 정책추진 방향과 32가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Ⅲ. 정책자료 참조).
- 2007년 '중앙 1호 문건'은 2004년부터 연속해서 식량증산을 달성하고, 농민 소득도 3년 연속 6%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중국 농업이 기초시설이 낙후된 전통농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통농업의 현대농업으로의 전환 목표를 제시하였음.
 - 농업현대화는 '11.5계획'과 2006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임.
 - ①농업재정 투자확대, ②농업기초시설 확충과 시설장비율 제고, ③농업기술 개발, ④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산업체계 확립, ⑤농촌 시장체계 확립, ⑥농민의 소질 향상, ⑦농촌개혁 심화, ⑧중국 공산당의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지도 역할 강화 등 농업현대화를 위한 8가지 정책추진 방향과 35가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Ⅲ. 정책자료' 참조).

참고자료

陳百明, 周小萍. 2005. "中國近期耕地資源與糧食綜合生產能力的變化趨勢." 『自然科學』26(5).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中

國統計出版社.

樓繼偉. 2006. "關于效率, 公平, 公正相互關系的若干思考." 『學習時報』第340期.

宋斌文. 2005.11.28. "我國無地農民,失地農民究竟有多少?"『中国改革报』.

全炯振. 2007. 『中國農業全要素生產率變化及其收斂性分析: 基于非參數DEA與參數SFA方法的實證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院博士學位論文.

王貴宸,魏道南,秦其明. 1984. 『農業生產責任制的建立和發展』. 河北人民出版社. "如何治疗农村税费改革后遗症." 『中國經濟時報』. 2006.10.13.

"推进农村综合改革力破黄宗羲怪圈."『中國經濟時報』. 2006.10.17.

전창곤, 조명기, 정정길. 2002.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R439.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 2007년 농업부문 재정투자

2.1. 개요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농업재정의 투자방향 제시, 투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투자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하에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농업재정 투자지침(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을 발표하였음.
- '투자지침'은 2006년도 농업재정 투자실적을 소개한데 이어 중앙정부의 2007년도 농업재정 투자계획을 개괄하고 총 41개 중점 투자항목의 내역과 규모를 소개하였음.

□ 2006년도 농업재정 투자실적

투자구분	투자실적
농촌 기초생활시설 확충	 ·식수안전프로젝트: 총 129억 위안(중앙 60억 위안, 지방 69억 위안) 투자. 2,897만 명 수혜. ·메탄가스시설 설치: 총 40.6억 위안(중앙 25억 위안, 지방 15.6억 위안) 투자. 가스 사용 농가 450만 호 증가. ·도로건설 및 보수: 총 430억 위안(중앙 190억 위안, 지방 240억 위안) 투자. 12만 km의 시멘트 도로 건설. ·중서부 농촌지역 전기공급 사업
생산능력 제고	 대규모 식량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퇴경환림 지역 농가를 위한 기초식량 공급 농지조성 대규모 관개지구의 관개체계 건설 및 절수프로젝트, 중부 4개 성(호북, 호남, 강서, 안휘)의 대형 배수펌프 교체 재배업 우량종자개발사업, 식물보호사업, 동물방역체계 건설 등 2006년도 식량생산 49,746만 톤(전년대비 1,344만 톤 증가) 농업구조조정 진전, 고품질 농산물 비율, 생산집중도 및 산지 가공비율 증가
농촌 사회사업	·총 60억 위안(중앙정부 예산과 국채) 투자 ·기숙제 학교 건설 등 기초교육시설 건설, 공공위생의료 서비스체계 건설, 가족계획서비스체계 건설, 문화서비스 시설 건설 등

斗豆: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7. 『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

○ 2006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농업부문 지출은 3,397억 위안으로 2005년 대비 422억 위안 증가하였음. 농촌건설 항목에 지출된 600여 억 위안 중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조건 및 생활조건 개선에 직접 사용된 금액은 360여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약 50억 위안 증가하였음.

□ 2007년도 농업재정 투자계획

투자방향	투자항목
농업재정 투자규모 확대	①고정자산 투자규모 확대: 중앙정부 예산 620억 위안 투자 - 수리·기상 설비 확충, 농촌지역 빈곤퇴치, 공공도로 건설 및 보수, 전력설비 확충, 농산물시장 건설, 농촌 사회사업 확대, 농촌 기층조직 건설 등에 중점 투자 ②농촌지역 농업생산 및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 - 식량생산, 수도·전기·도로·가스 시설 확충, 교육·문화·위생 시설 건설, 빈곤퇴치 등에 중점 투자 ③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서부대개발사업 투자규모 확대 ④농촌 금융체제 개혁, 투자재원 확충
농업현대화	・총 100여 억 위안 투자 ① 식량생산 증대 - 고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대규모 식량생산단지 조성, 토지비옥도 향상, 서부지역 퇴경환림 지역에 퇴경농가를 위한기초식량 공급 농지(口糧田) 조성 ②논 수리관개시설 건설 - 중소형 논 수리시설 건설, 대규모 관개지구의 관개체계 건설 및 절수프로젝트, 중부 4개 성(호북, 호남, 강서, 안휘)의대형배수펌프 교체 ③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 - 재배업 우량종자개발사업, 식물보호사업 - 축산업 성장방식 전환: 가축류 및 가금류의 우량종자개발사업, 동물방역체계 건설, 질병예방 수준 제고 - 수산양식업의 발전: 우량 어류종자개발사업, 원양어업 발전지원 -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검역체계 건설, 품질안전 수준 제고, 시장경쟁력 제고 ④ 농업구조조정 지원 - 고품질, 고산출, 고효율의 추구, 생태환경 및 안전성 고려 - 지역특화(주산단지화), 우량화, 산업화 추진 - 신강지역 고품질 면화생산단지, 장강유역 유채생산단지 조성 - 당료(糖料) 생산단지 조성, 농업현대화 시범사업 전개

斗豆: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7. 『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

 투자방향	투자항목
농촌지역 농업생산 및 생활조건 개선	①식수안전프로젝트 - 국무원이 비준한 《全國農村飲水安全工程"十一五"規劃》은 11.5계획 기간에 1.6억 농촌인구의 식수안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 - 2007년도에 중앙정부 예산 64억 위안을 투자하여 3,200만 농촌인구의 식수안전 문제 해결 ②공공도로 건설 및 보수 - 11.5계획 기간에 중앙정부 예산 1,000억 위안 투자예정. 농촌 공공도로 건설, 향(鄉)·촌(村)지역 81만 km의 도로 보수 - 2007년에는 국채, 중앙정부 예산 등 195억 위안 투자 예정 ③청정에너지원 확보: 메탄가스시설 설치사업 - 중앙정부 예산 25억 위안 투자. 농가에 메탄가스시설 설치 ④서부 농촌지역 전기공급 - 중앙정부 예산 16억 위안 투자하여 전기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전기공급 ⑤빈곤퇴치 - 국채 17억 위안 투자하여 농촌지역 빈곤퇴치 사업 실시 ⑥주혈흡충증(血吸蟲病) 종합치료 - 국채 3억 위안 투자하여 주혈흡충증의 발생 억제 ⑦진(鎮) 단위 경제종합개발 시범사업 추진, 소도시(小城鎮)와 현(縣) 경제 발전 지원
농촌 사회사업	①교육여건 개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각각 5억 위안 투자 예정. 농촌 기숙제학교 건설, 농촌지역 원격교육프로젝트 완성 - 10억 위안 투자하여 중서부 농촌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개조사업 추진 ②공공위생 및 의료서비스체계 건설 - 국채 27억 위안 투자하여 향(鄉)·진(鎭) 보건소를 중점으로 현(縣), 향, 촌 3급의 농촌 공공위생서비스체계 건설 ③기초문화시설 건설: 농촌통신사업 지원, 영화상영사업 지속추진 ④가족계획서비스체계 건설: 국채 2억 위안 투자하여 중서부지역 현, 향에 가족계획서비스센터 건설
투자효율 제고	①부문간 계획작성시 공동서명제도, 연도계획 상호 보고제도, 농업부문 투자정보의 온라인 교류제도 도입 ②투자 시범 현, 시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강화 ③투자 관리방법 개선, 관리의 규범화, 지원방식 개선 등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7. 『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

○ 중국의 2007년도 농업부문 재정투자는 농업현대화, 농촌지역 농업생산 및 생활조건 개선, 농촌 사회사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5대 목적인 농업생산력 발전, 농민 생활수준 향상, 농촌 사회간접자 본시설 확충, 농촌 사회사업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또한 이들 중점 투자분야는 '11.5계획'과 2006년 '중앙 1호 문건'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와 일치함.

2.2. 2007년도 41개 중점 투자항목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시설 투자항목(15개)

 투자항목	규모	세부 투자항목
1. 대규모 식량생산단지 조성	4억	소형 논 수리시설, 우량종자 육종시설 등 식량생산 기초시설 건설
2. 고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12억	현대적 농기계 장비율 제고, 표준 식량재배 농지 조성, 고품질 우량종자 육종번식기지 조성, 지역기술개발센터 설립, 유해생물 천 적곤충 번식육종기지 조성
3. 장강유역 고품질 유채 생산벨트 조성	-	우량종자 육종시설 건설, 통일적인 종자공 급체계, 소형 논 수리시설, 병충해 방제시 설, 토지비옥도 모니터링체계 건설
4. 당료(糖料) 생산단지	-	우량종자 육종시설 건설, 소형 논 수리시설 건설, 병충해 방제시설 건설
5. 종자사업	2억	《種子工程二期建設規劃》의 투자 항목
6. 가축, 가금, 수산 우량종자사업	2억	《全國畜禽良種工程二期建設規劃》,《全國水產良種工程二期建設規劃》의 투자항목
7. 식물보호사업	2억	《植物保護工程建設規劃》의 투자항목
8. 어항건설(漁政漁港)	2억	《農業執法服務基礎設施建設工程規劃》, 《全 國漁港建設規劃》의 투자항목
9. 동물방역체계 건설	10억	《全國動物防疫體系建設規劃》의 투자항목
10.대규모 관개지구 관개체계 건설 및 절수프로젝트	16억	-
11.중부지역 4개 성 대형 배수펌프 교체	5억	-
12.오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32억	《全國病險水庫除險加固二期工程規劃報告》 중앙과 지방의 투자비율은 동, 중, 서부지역 각각 1:2, 1:1, 2:1

투자항목	규모	세부 투자항목
13.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3억	중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보체계 및 검사 측정시스템 건설
14. 생물육종기술 산업화	-	농작물(쌀, 밀, 옥수수, 면화, 콩, 유채, 고구마, 시설채소 등), 가축, 가금 및 수산물, 임목의 신품종 개발
15. 농업현대화 시범사업	-	신품종 육종, 신기술 전시, 선도기업단지 건설, 수로 및 전기 건설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7. 『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

□ 농촌 기초생활시설 투자항목(9개)

투자항목	규모	세부 투자항목
16. 식수안전프로제트	64억	《全國農村飲水安全工程"十一五"規劃》에 의 거하여 2007년 3,200만 명의 식수문제 해결. 중서부 농촌지역에 우선 투자
17. 메탄가스시설 설치사업	25억	퇴경환림환초(退耕還林還草)지역, 식량주산지, 식수원 지역, 축산업 주산지, '남수북조' (南水北調) 통과지역 등 수자원보호지역, 혁명근거지, 소수민족 거주지역, 주혈흡충증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 중서부 지역, 특히 서부지역에 우선 투자
18. 공공도로 건설 및 보수	195억	《農村公路建设规划》의 투자항목
19. 중서부 농촌지역 전기 공급망 개선	9억	중서부 농촌지역 중 저전압 지역의 전기 공 급망 개선
20. 전기공급사업	7억	중서부 농촌지역 중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전기공급
21. 주혈흡충증(血吸蟲病) 종합치료	3억	-
22. 진(鎮) 단위 종합경제 개발 시범사업	-	특색산업형, 공업주도형, 시장인도형, 종합 형 등 4가지 유형의 소도시(小城镇) 개발
23. 공공근로사업(以工代赈)	45억	빈곤지역 농업생산기초시설 건설(소형 논 수리시설 건설, 농지조성, 도로 건설, 식수 개발, 강유역 종합개발 등)
24. 빈곤지역 농민 이주 시범사업	12억	서부 빈곤농촌지역 농민 이주 사업

斗豆: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7. 『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

□ 생태환경보호 투자항목(7개)

투자항목	규모	세부 투자항목
25. 퇴경환림(退耕還林) 프로젝트	12억	서부 농촌지역과 생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사도 25도 이상 토지유실이 심각한 경사 지 농지 및 사막화가 진행되는 농지의 경작 금지 및 생태환경 복원. 기초식량 농지조성
26. 퇴목환초(退牧還草) 프로젝트	14억	서부 천연초원지역의 방목 금지. 초지의 울 타리 설치 및 종자비 보조
27. 방호림(防護林) 조성	5억	3북(西北, 華北, 東北) 방호림, 장강(長江) 중 하류, 주강(珠江), 연해(沿海) 방호림 조성
28. 종묘기지 건설	1억	채종기지 건설, 우량종자 육종, 종묘의 품질 검사·검역 체계 수립, 종자 저장시설 건설
29. 북경·천진지역 모래바람 관리사업	14억	《京津風沙源治理工程規劃(2001-2010)》의 투자항목
30. 습지보호사업	3억	《全國濕地保護工程實施規劃(2005-2010)》의 투자항목
31.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억	《2006-2008年小水電代燃料生態保護工程規 劃》의 투자항목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7. 『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

□ 농촌 사회사업 투자항목(10개)

투자항목	규모	세부 투자항목
32. 기숙제학교건설 사업	10억	-
33. 원격교육프로젝트	5억	2007년은 농촌 원격교육 프로젝트 시행 마지막 해로 18개 성의 현 단위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추진
34. 중서부 농촌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개조	10억	《國家發展改革委,教育部關于編報中西部農村 初中校舍改造工程建設規劃的通知》의 투자 항목
35. 농민 직업교육훈련	10억	《中等職業教育基礎能力建設規劃(2005-201 0)》의 투자항목
36. 공공위생서비스체계 건설	27억	《農村衛生服務體系建設與發展規劃》의 투자 항목
37. 향·진 문화센터 건설	1억	《全國"十一五"鄉鎮文化站建設規劃》의 투자항목
38. 농촌 통신사업	5억	《國務院辦公廳關于進一步做好新時期廣播電 視村村通工作的通知》의 투자항목

 투자항목	규모	세부 투자항목
39. 영화상영사업	0.5억	이동 영화상영 차량 및 장비 구입
40. 가족계획서비스체계 수립	2억	《關于報送2007年農村計劃生育服務體系建設 方案的通知》의 투자항목
41. 농민 보건체육사업	0.5억	《關于報送2007年農民體育健身工程建設方案 的通知》의 투자항목

斗豆: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7. 『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

2.3. 농업재정 투자현황 및 특징

□ 개혁개방 이래 농업부문 재정지출 총액은 1978년 150.7억 위안에서 2005년 2,450.3억 위안으로 연평균 10.9%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기간 13.4%에서 7.2%로 감소하였음.

위안 3000 16 ■농업재정지출액 14 2500 농업재정 비율 12 2000 10 1500 8 6 1000 4 500 2 1978 1980 1982 1984 1986 1987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연도

그림 1 개혁개방 이후 농업재정 지출의 변화 추이, 1978~2005년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2007. 「2006 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 중국의 농업부문 재정지출은 개혁개방 초기 1979~1981년까지 잠시 감소하다 1982년에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1990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1998년부터 '농업 기본건설 지출'에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이 포함되면서 농업재정 지출이 대폭 증가하였음.
-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농업재정 지출액 규모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 였지만 전체 국가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여 약 7~8%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농업재정 지출액 규모는1979~1985년까지 점차 하락하다 1986~1991년 동안 상승 추세를 나타냈으며, 1992~1997년 동안 또다시 하락하였음. 1998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농업재정 지출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5년 7.2%를 나타냈음.
- 한편 개혁개방 이래 농업(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포함)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재정 지출 비중은 대폭 감소한 후 1995년을 전후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1978년 14.8%에서 1995년 4.8%로 감소하였지만 1996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96년 5.1%에서 2005년 11.4%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농업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농업 GDP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
- □ 개혁개방 이래 농업재정 지출 가운데 농업생산지원 및 사업비³⁾ 지출이 가장 많아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생산기반시설 투자가 18.5~39.9%로 이들 두 항목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였음. 한편 각종 구제 비용은 2.8~8.4%, R&D 투자는 매년 0.5~1.5%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³⁾ 농업생산지원 비용은 농촌집단조직이나 농가의 각 항목의 생산적 지출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미함. 소형 논 수리관개시설, 관정 건설 보조비,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보조비, 향진기업 자금, 농업기술보급과 식물보호 보조비, 농촌지역 조림과 임목 보호 보조비, 식량생산 전용 자금 등이 포함됨. 사업비는 농림수리기상 부문사업비를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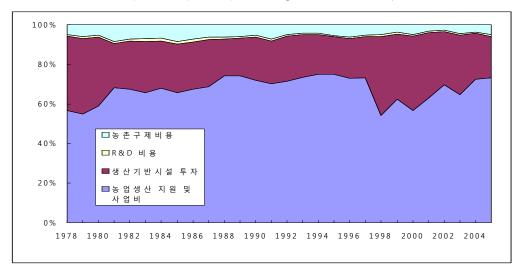


그림 2 개혁개방 이후 농업재정 지출 항목의 변화 추이, 1978~2005년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2007. 『2006 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 전체 농업재정 지출 가운데 농업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생산 기반시설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개혁개방 이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1978년 33.9% 이던 투자 비중이 1997년에는 20.1%로 감소하였으나 1998 년 국채를 이용한 생산기반시설 투자 확대로 전년에 비해 300.9억 위안이 증가하여 비중이 39.9%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1999년 이후 또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20.9%를 차지하였음.
- 또한 농업부문 R&D 투자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체 농업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84년에도 겨우 1.5%에 불과하였음. 전체 농업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 R&D 투자의 비중은 1997년 0.26%에서 2003년 0.41%로 증가하였지만 1980년대 30개 저소득국가의 평균 0.65%보다 낮으며(黃季焜等, 1998), FAO가 권고한 평균 1% 수준보다 낮음(汪飛杰等, 2006; 章力建, 2006).

⁴⁾ 농업부문 R&D 비용(農業科技三項費用)은 중앙정부와 지방 각급 정부의 농업기 술 발전을 위한 재정지출 가운데 시제품 제작비, 실험비 그리고 중요 과학연구 항목 등 3개 항목에 대한 보조비임.

○ 개혁개방 이래 농업재정 지출의 농업 GDP에 대한 산출탄력성은 비교적 변동이 심한 특성을 보였으며, 1996년 이후 농업 GDP의 증가속도가 농업재정 지출 증가 속도보다 느려 산출탄력성은 1보다 작고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참고자료

陳偉. 2006. 『我國財政農業支出規模與效益研究』. 陝西師范大學碩士學位論文.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7. 『2007年政府支農投資指南』.

鄒小勤. 2006. 『農業財政支出對農村經濟發展的效應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章力建. 2006. "對農業科研投入開源, 節流與挖潛的思考." 『安徽農業科學』 34(6): 1043-1044.

汪飛杰, 張應禄, 劉振虎. 2006. "我國農業科研投入現狀及政策建議." 『農業科技管理』 25(4): 55-56.

黄季焜,胡瑞法,方向東. 1998. "農業科研投資的總量分析." 『農業科研經濟管理』 3: 23-25, 32.

中國國家統計局. 2007. 『2006 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3. 『물권법』5) 제정과 농촌 토지소유제도

3.1. 개요

- □ 중국은 1954년 9월 헌법 제정 이후 기본법전 제정계획에 따라 민법전(民法典)을 제정하기 위해 수차례 초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음. 그리고 각칙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후 이를 모아 완전한 민법전을 제정한다는 입법방침에 따라 1986년 4월 민법전과 민법총칙의 중간적 성격을 따는 『민법통칙 民法通則』(1987.11.1 시행)이 제정된 것을 비롯해 이외에도 다수의 단행법이 제정되었음.
- 중국의 민법 체계는 크게 민사기본법인 『민법통칙』과 각칙에 해당하는 민사 특별법(단행법), 민사법규(조례), 민법규칙 등 4부분으로 구분됨.
 - 주요 단행법으로는 『혼인법 婚姻法』(1950.5.1 제정; 1980.9.10 수정, 1981.1.1 시행; 2001.4.28 재수정), 『상속법 繼承法』(1985.4.10 제정, 1985.10.1 시행), 『회사법 公司法』(1993.12.29 제정, 1994.7.1. 시행), 『담보법 擔保法』(1995.6.30 제정, 1997.7.1 시행), 『계약법 合同法』 (1999.3.15 제정, 1985.10.1 시행) 등이 있음.
- □ 제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차 회의(1998.3.5~9)에서 2010년까지 민법전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당시 학술계에서 다수의 민법 초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민법전 제정을 2005년 3월까지 앞당겨 완성한다는 새로운 방침에 따라 2002년 12월 23일 제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차 회의에 『민법(초안)』이 제출되었음.
- 『민법(초안)』은 총칙(제1편), 물권법(제2편), 계약법(제3편), 인격권법(제4편), 혼인법(제5편), 수양법(제6편), 상속법(제7편), 권리침해책임법(제8편), 대외민사법관계의 법률적용법(제9편) 등 총 9편으로 이루어졌음.

^{5) 『}물권법』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 담보권 등 재산권의 보호와 이용 권리를 규정하는 민법의 중요 구성 법률임.

- 그러나『민법(초안)』은 민법학자들의 반대가 심해 입법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2005~2006년 사이에 『물권법』과 『권리침해책임법 侵權法』, 2006~2007 년 사이에『민법통칙』을 수정하고 가능한 경우 기존 단행법들도 수정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음.
- □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 南巡講話'(1992.1.18~2.23)와 중국 공산당 제 14차 전국대표대회(1992.10.12~18)를 계기로 1993년 수정된 『헌법』(제 15조)에서 계획경제체제를 대체하여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명문화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입법체계의 일환으로 『물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1999년 『계약법』 제정 이후 『물권법』이 민사입법의 핵심이 되었으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중 국 물권법제정 연구과제조'와 인민대학이 제출한 초안을 토대로 『물권법(1차 초안)』을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2004년 8월 2차 초안을 제출하였음.
- 『물권법(2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2007년 3월 개최 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3.5~16)에서 신중국 건국 이후 사 유재산권 보호를 최초로 명문화한 『물권법』이 통과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 『물권법』은 사유제의 인정이 공유제에 기초하고 있는 중국 사회주의 정치이 념과 배치된다는 이념적 논란으로 1994년 초안 작성업무를 시작한 이래 2002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총 8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100여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무려 13년에 걸친 심의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음.
- 『물권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존재했으며, 특히 북경대학 법학 원 꽁시엔티엔(鞏獻田) 교수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반대 서명을 주도하는 등 물권법 초안을 비판하고 법률 통과 이전에 진일보된 공개토론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음.6)

○ 『물권법』은 제1편 총칙(1~3장, 1~ 38조), 제2편 소유권(4~9장, 39~116 조), 제3편 용익물권(用益物權; 10~14장, 117~169조), 제4편 담보물권 (15~18장, 170~240조), 제5편 점유(19장, 241~245조), 부칙(246~247조) 등 총 5편 19장 245조와 부칙 2조로 이루어졌음(Ⅲ. 정책자료 참조).

3.2. 『물권법』제정 배경과 의의

- □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진전과 함께 재산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규정할 법제도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음. 특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 는 민영경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가 과거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영경제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영향력이 증대된 소위 '신사회 계층'⁷⁾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것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체제안

⁶⁾ 주요 비판내용은 ①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위배되며,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이 인민대표대회를 거치지 않고도 국유재산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손실 초래, ② 농촌의 집단소유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불명확, ③합법적인 사적재산과 비합법적인 사적재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과 상호 모순, ④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 규정과불법적인 권리침해자의 합법화를 방지하는 규정 부족, ⑤『물권법』과 짝을 이루는 『권리침해책임법 侵權法』이 함께 제정되지 않아 투기자들에게 기회와시간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것 등임.

^{7) &#}x27;신사회계층'은 개혁개방 이후 출현한 새로운 직업군으로 비공유제 경제부문에 종사하거나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프리랜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함.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선전부장 천시칭(陳喜慶)은 이들의 수가 5,000만 명에이르며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1억 5,000만 명에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신사회계층'의 특징으로 다음의 8가지를 들고 있다. ①노동자, 농민, 간부, 지식인으로부터 분화되어 형성, ②대부분 지식인, ③주

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었음.

- □ 『물권법』은 다수의 단행법에 산재되어 있던 재산권 관련 규정을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특히 재산의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중국이 재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을 기본법으로 보장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기본법은 1986년 4월 제정된 『민법통칙』으로서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보장 해 줄 수 있는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음.
- 『물권법』 제정 이전에는 민사기본법인 『민법통칙』 외에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담보법』 등 단행법에 물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지만 법률체계가 통일되지 않고 집행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물권관계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했음.
- 2004년 3월 개정한 『헌법』 제11조 2항, 13조에서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소유제 관련 논란을 일단락하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뒷받침하는 법률로서 『물권법』을 제정하였음. 다만 법률은 "재산의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소유제의 공동발전을 모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의 공유제가 근간임을 명시하고 있음(『헌법』 제6조, 『물권법』 제3조).

로 비공유제 영역에 집중 분포, ④대부분 고소득자, ⑤직업이나 신분이 불안정, ⑥정치적인 요구 증대, ⑦대부분 비공산당원, ⑧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人民日報』, 2007.6.11).

3.3. 『물권법』의 주요 내용(농업관련 부분)

□ 토지수용 및 보상

- 집단소유인 중국 농촌의 토지는 그동안 개발수요의 증대로 토지수용이 빈번 하여 이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의 생활보장 문제가 중요한 문제 로 제기되었음. 최근 들어 증가한 농민들의 집단적 저항(群體性抗議)도 토 지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가 주요 원인임.
- 『물권법』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집단소유 토지의 수용을 허용하고, 토지수용시 토지보상비, 이주보조비와 지상정착물 및 재배중인 농작물에 대 한 보상과 함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여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생활을 보 장하도록 하였음(제42조).
 - 그러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이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공장 또는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아닌 수용 이전의 농민소득을 기초로 결정되어 농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촌 집단토지 및 농가 택지의 재산권

-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집단소유와 농가경영이 복합된 형태로 소유권은 농 촌집단조직이 가지고 있고 토지를 도급받은 농가가 일종의 사용권(이용권)인 토지도급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을 행사하고 있음. 토지도급경영권은 『헌 법』, 『농촌토지도급법』, 『토지관리법』 등의 법률에서 일종의 임차권으로 취 급되고 있음.
- 『물권법』은 토지도급경영권의 도급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을 허용(126조)하여 장기적으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음. 그러나 기한 만료 후 자동 연장되도록 한 건설용지의 사용권과는 달리 농지도급경

^{8) 『}물권법』은 제126조에서 농촌토지의 사용기한을 농지의 경우 30년, 초지 30~50년, 임야 30~7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영권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음.

- 『물권법』은 토지도급경영권을 물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민이 도급경영하는 농지, 초지, 임지의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행사하여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의 농업생산을 가능하도록 하였음(125조). 또한 이를 등기대상에 포함시켜(127조) 토지도급 발주자(대부분은 촌민위원회)가 임의로 토지도급 경영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130조).
- 『물권법』에서는 토지도급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농민이 『농촌토지도급법』 의 관련 규정에 의해 도급 기간 내에 토지도급경영권을 전환도급(轉包), 교 환(互換), 양도(轉讓) 등의 방식으로 유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28 조). 이 경우 당사자는 현(縣) 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토지도급경영권 변경등 기를 하도록 하였음(129조). 또한 토지유동 기간은 토지도급 기한의 잔여기 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적인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비농업 용도로 의 사용을 금지하였음(128조).
- 『물권법』에서는 농가에 제공되는 농가택지사용권을 행사하는 농민이 집단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점유권과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토지에 주택과 그부속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152조). 그러나 농가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 및 양도는 현행『토지관리법』등의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어(153조)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3.4. 농촌 토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 □ 1978년 이후 중국 농촌에 도입된 농가단위 생산책임제는 집단농업경영을 개별농가경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농업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였음. 이러한 변화는 토지제도 측면에서 보면 1950년대 농업집단화 이후 확립된 집단소유제의 변화 없이 개별농가가 토지경영권(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의미함.
-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토지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국의 농업경

영시스템은 이른바 '쌍층경영시스템'(双層經營体制)으로 불리고 있음. 이는 토지소유제 측면의 집단소유제와 토지사용제 측면(혹은 농업경영 측면)의 농가단위 생산책임제인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상호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를 경영측면에서 보면 토지의 집단소유제에서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농 촌집단경제조직'》의 통일적인 경영기능¹⁰⁾과 토지경영권을 획득한 농가의 개별적인 분산경영의 상호 결합을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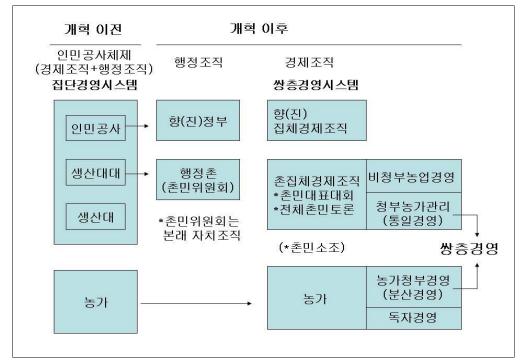


그림 3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경영시스템 개념도

자료: 이일영(1999). p.194를 참조로 재구성

⁹⁾ 토지소유자의 실체와 관련하여 『토지관리법』은 제2장 제10조에서 "농민 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村)농민 집단소유로 귀속되며, 촌(村)집단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가 경영하고 관리한다. 촌내에 두 개 이상의 농촌집단경제조직의 집단소유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각 농촌집단경제조직 혹은 촌민소조(村民小組)가 경영하고 관리한다. 이미 향·진 농민 집단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향·진 농촌집단경제조직이 경영하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¹⁰⁾ 농자재 공급, 농기계 작업, 방제, 관개 등 농업서비스 기능을 의미함.

- 개혁개방 이후 변화된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를 통과한 『헌법』과 1986년 6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통과한 『토지관리법』을 통해 법제화 되었음.
- 농가토지도급경영제를 대표하는 포간도호(包干到户)가 중국 농촌의 지배적 인 농업경영방식으로 자리잡은 1984년 이후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각종 문건과 일부 법률을 통해 제도의 법률적인 지위를 보장하였음. 그러나 농가 토지도급경영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전문 법률이 존재하지 않 다가 2003년 3월 제정된 『농촌토지도급법』11)을 통해 최종 법제화되었음.
- 2003년 3월 1일 정식 시행된 『농촌토지도급법』은 국가법률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도급경영권을 확인시켜 준 최초의 법률임. 이 법률은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법률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토지도급 기한의 30년 불변을 명시하여 제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였음. 또한 토지도급자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권익, 특히 토지도급경영권의 보호를 보장하였음.
 - 법률은 토지도급 기간에 토지도급경영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도급기간 내에는 도급준 토지를 임의로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음. 농가가 도시로 이농하는 경우에도 원할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법률에 의거하여 유동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률은 또한 전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등의 방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허용함으로써 규모화 경영의 발전을 도모하였음.
- □ 토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재산권인 토지소유권과 토지경영권이 분리된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토지소유권과 토지경영권의 주체와 성질, 권리와 의 무, 재산권 행사의 범위 등에서 불안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¹¹⁾ 총 5장 65조로 구성되었으며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2002.8.29)에서 통과되어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중국에서 농촌의 토지소유권을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헌법』, 『민법통칙』,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등이 있음. 이번에 제정된 『물권법』은 이들 단행법에 산재되어 있던 농촌 토지의 재산권 관련 규정을 통합한 상위법으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기본법의 위상을 지님.
- 『물권법』은 농촌 토지의 소유제를 농민집단소유제로 규정하고(60조) 이를 향·진 농민 집단소유, 촌 농민 집단소유, 촌내 두 개 이상의 농민 집단소유 의 3급으로 분류하여 각각 향·진 집단경제조직, 촌 집단경제조직 혹은 촌민 위원회, 촌내 해당 집단경제조직 혹은 촌민소조가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음(60조).
 - 농촌 토지의 소유권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법통칙』,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등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존재했지만 재산권 관련 기본법인 『물권법』이 이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농촌토지소유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음.
 -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집단에는 촌민소조, 촌민위원회뿐만 아니라 향·진 정부가 포함됨. 이는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현재와 같은 행정조직체계로 개편할 때 과거 인민공사체제에서 존재했던 3급소유제(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대)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현재의 향·진 정부-촌민위원회-촌민소조의 3급소유제 형태로 온존하고 있기 때문임.
- □ 토지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 토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도급 경영권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물권법』은 토지도급경영권을 물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유권, 수익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환도급, 교 환, 양도 등 토지사용권의 행사도 명확히 보장하고 있음.
 - 토지사용권은 개념적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토지를 이용하고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협의의 의미로 이해할 때는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에 포함되는 토지점 유권, 토지수익권, 토지처분권과 병렬적인 관계임. 또한 광의로 해석할 때는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하여 토지점유권, 협의의 토지사용권, 부분적인 수

익권, 불완전한 처분권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영권은 사용권에 속하여 양도, 전대, 출자, 저당, 수익 등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토지도급경영권은 토지사용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경작권, 부분적인 수익권 그리고 불완전한 처분권을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의 실제 권리 내용은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토지경영권 측면에서 농촌 행정조직과 간부들의 간섭으로 작물 선택 및 생산방식 결정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있음. 또한 토지사용권 측면에서는 농촌 행정조직이 규모경영을 이유로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음.
 - 토지수익권 측면에서는 농촌 행정조직이 공공사업 실시 등의 이유로 고액의 토지도급 비용을 부과하거나 토지용도 변경시(토지수용 등) 해당 토지를 도 급한 농민의 토지보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음.
- 劉守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가의 89.5%가 토지도급경영권을 토지경작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8.5%가 토지계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토지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농가는 1.8%에 불과함(葉劍平, 2000).
- 蓋國强(2001)의 연구도 214개 농가를 대상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의 행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환도급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농민들이 토지도 급경영권의 상속, 저당, 당도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토지도급경영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촌민이나 촌 외부인에게 도급토지를 전환도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농가가 각각 85.5%, 59.8%를 차지하였음. 이외에 상속, 저당, 양도의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각각 60.3%, 11.2%, 14.0%를 차지하였음.

참고자료

- 海外調査室 아주經濟팀. 2007. "중국 物權法 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海外經濟情報』 제2007-21호(2007.3.16).
- 畢宝德 主編. 2001. 『土地經濟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蓋國强. 2001. "農村土地使用權流轉研究:以山東省爲例". 『中國軟科學』5: 114-120.
- 『人民日報』. 2007.6.11.
- 葉劍平. 2000. 『中國農村土地產權制度研究』. 中國農業出版社.
- 이일영. 1999. "중국 농업에 있어서 '쌍층경영'의 형성과 분화: 북경시 근교의 사례연구". 『경제학연구』 47(2).
- 이평복. 2007. "中國 물권법(物權法)의 주요 내용과 영향". KOTRA 다렌무역관 보고내용(2007.4.30).

4. 『농민전업합작사법』시행과 중국의 농민협동조직

4.1. 개요

- □ 우리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준하는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법 農民專業合作社法』이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부칙에 의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농민전업합작사법』(이하 『합작사법』이라 칭함)은 우리의 협동조합에 해당 하는 농민전업합작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총 9장 56조로 이루어짐(법률 전문은 Ⅲ. 정책자료 참조).
 - 총칙(제1장), 설립과 등기(제2장), 조합원(제3장), 기관(제4장), 재무관리(제5장),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제6장), 지원정책(제7장), 법률책임(제8장), 부칙(제9장)
- 농민전업합작사(農民專業合作社)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진전되면서 중국 농촌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농민들의 협동조직인 농민합작조직(農民 合作組織), 농민합작경제조직(農民合作經濟組織)의 주요 형식의 하나임.
 -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에서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정착된 후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협동조직은 1950년대 농업 집단화(collectivization)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조직된 협동조직과¹²⁾ 구별하여 신형(新型) 협동조직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전업(專業)은 특정 품목이나 업종을 강조한 것으로 농민전업합작조직(農民專業合作組織) 또는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農民專業合作經濟組織)은 특정 품목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농가들의 협동조직을 의미함.
 - 신형 농민전업합작조직 또는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은 구체적으로 전업협회 (專業協會), 전업합작사(專業合作社), 주식합작사(股份合作社), 전업기술

¹²⁾ 초급농업합작사(初級農業合作社), 고급농업합작사(高級農業合作社)를 지칭함.

협회(專業技術協會), 기술연구회(技術研究會), 합작협회(合作協會), 서비스센터(服務中心), 서비스회사(服務公司) 등 다양한 명칭과 형식으로 발전하였음.

- 합작사의 영어 표현은 Cooperative로 협동조합을 의미하며, 전업합작사의 영어표현은 Specialized Cooperative로 특정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인 품목조합에 해당함.
 - 농민전업합작사는 농업전업합작사 또는 농촌전업합작사로도 불리는데 각각 주체, 산업, 지역범주가 강조되었을 뿐 모두 품목조합을 지칭함.

4.2. 『농민전업합작사법』의 주요 내용

■ 총칙(1장)

- 1장 총칙(1~9조)에서는 입법목적(1조)과 사업범위(2조)를 명시하고 합작사의 기본원칙(3조), 법률 지위 및 책임(4,5조), 기본임무(7조)와 지원정책(8,9조) 등을 규정하였음.
- 법률은 농민전업합작사를 "농가토지도급경영의 기초 위에 동일 품목 농산물의 생산 및 경영 주체나 동일한 농업생산 및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조직"(2조)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인 품목조합과 유사함. 법률은 전업합작사들이 반드시 등기를실시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였음(4조).
 - 법률은 조합원을 위한 농자재의 구매, 농산물의 가공, 운송, 저장 및 판매 그리고 농업 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정보의 제공을 전업합작사의 주요 사업범위로 정하고 있음(2조).

- 법률은 전업합작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농민위주, 공동이익 추구, 가입 탈퇴의 자유, 조합원 간 평등, 민주적인 관리, 납입출자액에 따른 배당 등을 명시함으로써 1950년대 농업집단화 시기의 합작사와 구별되는 신형 합작사, 즉 자본주의형 협동조직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법률은 국가의 재정지원과 세금혜택, 금융, 과학기술 및 인력 지원(8 조)을 명시하고, 현 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농업 및 기타 유관부문과 연계하 여 전업합작사의 설립과 발전을 지도·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9조)하도 록 함으로써 관(官)의 주도적 역할을 명시하였음.
 - 법률은 별도의 장(7장)을 할애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 주체와 관련된 기타 민사 법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정부의 정책이 중국 농민협동조직 발전의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토대로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관철되는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이 반 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특히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현실인식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설립과 등기(2장)

- 2장 설립과 등기(10~13조)에서는 전업합작사 설립에 필요한 구비조건(10조), 설립총회 의결사항(11조), 정관의 기재사항(12조), 설립등기 절차(13조)를 규 정하고 있음.
- 법률은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고(14조) 법에 부합하는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에 부합하는 명칭과 정관이 정하는 주소지가 있고,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조합원의 출자가 있는 경우 전업합작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10조).

○ 전업합작사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 조합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정관의 통과는 전체 발기인의 만장일치를 의무화 하였음(11조). 설립총회를 마친 전업합작사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무원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상(工商) 부문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담당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속을 완료하고 영업허가서(營業執照)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음(13조). 또한 법정등기 사항 변동시 변경등기를 의무화 하였음(13조).

□ 조합원(3장)

- 3장 조합원(14~21조)에서는 조합원 자격(14조) 및 구성(15조)을 규정하고, 조합원의 권리(16조)와 의무(18조), 표결방식(17조), 탈퇴 및 제명(19~21조) 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은 조합원의 자격을 민사행위 능력을 지닌 공민(公民)과 전업합작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체 또는 사회단 체로 규정하고(14조), 공공 사무관리 직능단체는 가입을 불허하였음(14조).
 - 조합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조합원 가운데 반드시 농민이 8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음(15조). 20인 이하의 전업합작사의 경우 하나의 기업, 사업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들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15조).
- 법률은 조합원 총회의 선거와 표결에서 모든 조합원이 1인 1표의 기본표결 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하였음. 그러 나 출자액 또는 전업합작사와의 거래랑(액)이 비교적 많은 조합원은 정관 규 정에 따라 추가 표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17조). 단, 추가 표결권의 총 수는 기본 표결권 총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정관이 추가 표결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17조).
- 법률은 조합원이 전업합작사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계연도 마감 3개월 전 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되, 기업, 사업단체 혹은 사회단

체 조합원은 6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음(19조).

□ 기관(4장)

- 4장 기관(22~31조)에서는 전업합작사의 최고 권력기구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22조 각항)과 의사진행 규칙(23조), 임시총회의 소집(24조), 조합원 대표대회의 개최(25조), 이사장과 감사의 임명, 이사회와 감사회의 설립 및 표결규칙(26~27조), 직원채용(28조), 이사장, 감사 및 관리간부의 금지성 의무(29조) 및 겸임 금지(30조), 공무원의 전업합작사 이사장, 이사, 감사, 경리, 재무회계담당자 임용 금지(31조)를 규정하였음.
- 법률은 전업합작사의 조합원 총회는 1년에 적어도 한 번(24조) 조합원 3/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선거와 결의시 전체 조합원 표결권의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하며, 정관 개정 또는 합병, 분할 및 해산 결의시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음(23조). 또한 조합원 30% 이상의 발의로 임 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24조) 조합원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정관 규정에 의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25조).

□ 재무관리(5장)

- 5장 재무관리(32~38조)에서는 전업합작사의 재무회계제도(32~34조), 적립 금(公積金)의 사용(35조), 조합원의 출자구좌 개설 및 기재사항(36조), 잉여 금의 분배 방식 및 재무회계 감독(37~38조)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업합작사는 정관의 규정과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의해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 적립금을 공제하여 손실보전, 확대재생산, 전환출자에 사용하도록하고, 공제된 적립금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몫으로 환산하도록 하였음(35조). 또한 전업합작사는 조합원 개개인의 출자구좌를 개설하고 ①출자액, ②적립금의 환산 몫, ③조합원과 전업합작사의 거래량(거래액)을 기재하도록 하였음(36조).

- 손실보전과 적립금을 공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반환 또는 배당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의 규정 혹은 조합원 총회 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였음(37조).
 - ①조합원과 전업합작사의 거래량(거래액) 비율에 따라 반환 혹은 배당을 실 시하되 그 총액은 분배가 가능한 잉여금의 6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②규정 ①에 의해 반환 혹은 배당을 실시하고 남는 잉여금은 조합원 구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환산 몫, 전업합작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기부받은 재산의 환산 몫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할 것.
- □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6장), 지원정책(7장), 법률책임(8장), 부칙(9장)
- 6장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39~48조)에서는 전업합작사의 합병(39조), 분할의 법률 책임(40조), 해산의 사유(41조), 청산 절차(42~47조)와 파산의 법률 적용(48조)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7장 지원정책(49~52조)에서는 국가가 조건을 갖춘 전업합작사에 농업부문 투자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49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금을 마련하여 전업합작사가 추진하는 정보, 교육훈련, 농산물 품질표준 및 인증,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 시장판매, 기술보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음(50조). 특히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 및 빈곤지역의 전업합작사와 국가 및 사회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업합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음(50조).
 - 이밖에도 정책성 금융기관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업합 작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51조). 또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전업합 작사가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등 각 단계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였음(52조).
- 8장 법률책임(53~55조)에서는 전업합작사의 재산권이나 생산 및 경영의 자주권이 침해받았을 경우(53조), 전업합작사가 허위로 설립등기를 하거나 회계보고 등의 행위를 한 경우(54~55조) 위법 주체의 행정 및 형사책임을 규

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9장 부칙에서는 법률의 시행일자를 2007년 7월 1일로 명시하였음(56조).

4.3. 중국 농민협동조직의 발전 현황과 특징

□ 농민협동조직의 발전 과정

- 중국의 농민협동조직은 1980년대 초반 농가토지도급경영제 정착 이후 나타 난 소규모 분산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한 이래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겪었음.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정책 및 자금 지원을 통해 농민협동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까지는 농민협동조직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생자멸하는 시기로 협회, 연구회, 전업기술협회, 전업합작사, 연합 체, 서비스센터, 회사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음. 이 시기의 농민협동조직 은 조직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정관도 없어 규범화 정도가 매우 낮았음.
-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규범화된 협동조직의 시범운영, 정관의 시범 제정 등을 통해 농민협동조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음. 특히 2001년 11월 WTO 가입 이후 삼농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을 제시하고, 법률제정, 정책지원, 시범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을 통해 농민협동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농업법』은 총칙 제2조에서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을 농업생산·경영 조직¹³⁾의 하나로 규정하였음. 또한 제2장(농업생산경영체제) 제11 조는 국가가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기초위에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형식의 전업합작경제조직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음.

^{13) 『}농업법』에서는 농업생산·경영 조직을 농촌집단경제조직(農村集體經濟組織),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農民專業合作經濟組織), 농업기업(農業企業), 기타 농업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조직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02년 11월 농업부는 농민협동조직의 육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100개의 농업전업합작경제조직을 시범단위로 선정한데 이어 6개의 시 급 농업전업합작경제조직을 종합시범단위로 선정하였음. 2003년에는 절강성을 시범 성으로 선정한데 이어 2004년에도 111개의 시범단위를 선정하였음. 또한 2005년에는 북경, 길림성, 절강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 영하회족자치구, 사천성 등 11개 성과 산동성 청도시에서 농업전업합작조직 건설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음.
- 2003~2005년 동안 재정부는 농업전업합작조직 건설 시범사업에 1.5억 위 안의 자금을 지원하였음. 이외에도 다른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제도, 자금, 기술 측면에서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을 지원하였음.¹⁴⁾

□ 중국 농민협동조직의 발전 현황 및 특징

-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만 개의 농민협동조직이 있으며, 전체 농가의 9.8%인 2,363만 호의 농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조합원은 아니지만 농민협동조직과 관련된 농가 3,245만 호를 포함하면 전체 농가의 23.3%가 농민협동조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의 농민협동조직(合作經濟組織)은 조직의 주체와 관련하여 크게 전업 협회(專業協會), 전업합작사(專業合作社), 주식제합작사(股份合作社)로 구 분할 수 있음. 이 가운데 전업합작사는 가장 전형적인 농민협동조직으로서 이 번에 제정된 법률도 전업합작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전업협회는 기술협회와 연구회가 대표적인 형식이며 회원으로부터 매년 일 정액의 회비를 받고 주로 기술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주식제합작사는 일반적으로 농업기업, 농업기술 보급단위, 공급 및 판매단위 등이 출자하여

¹⁴⁾ 대표적으로 감숙성은 2004년 5월 '농민전업합작조직의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절강성은 같은 해 11월 '절강성 농민전업합작사 조례'(2005.1.1 시행)를 제정하였음. 2004년과 2005년도에 전국의 지방정부에서 각각 6,700여만 위안과 1.4억 위안이 지원되었으며, 600여 개의 농민협동조직이 시범적으로 조직되었음(郭慶海, 2007).

주주가 되고, 소수 조합원의 출자를 받아 조직된 형태임.

- 200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조직된 비교적 규범화된 14만개 협동조직 가운 데 전업기술협회가 85%, 전업합작사가 10%, 주식제합작사가 5%를 차지하였음(侯保疆, 2007).
- 산업분포 측면에서 보면 이들 농민협동조직 중 재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협 동조직이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축산업 24.7%, 어업 5.1%, 농기계서비스 4.1%, 기타 18.5% 순임.
 - 중국 19개 성에 대한 조사결과(全國人大農業與農村委員會課題組, 2004)) 도 재배업 비율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축산업과 어업 34.0%, 기타 23.2% 순임. 또한 식량, 면화, 유지작물과 관련된 농민협동조직의 수는 약 10% 내외로 매우 적은 반면 채소, 과일은 각각 30%, 20%를 차지하였음(王新利, 李世武, 2007).
- 농민협동조직은 사업내용에 따라 생산형, 구매형, 판매형, 가공형, 기술서비 스형 및 이들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아우른 종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생산과 판매를 결합한 협동조직이 37.3%, 운송과 판매를 결합한 협동조직이 11.3%, 가공형이 8.9%, 창고저장서비스형이 2%, 기술서비스형이 19.5%, 기타 21%를 차지하고 있음(全國人大農委法案室, 2006).
- 농민협동조직은 조직의 결성 과정에서 기층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농민주도 형(自辦型), 관주도형(官辦型), 결합형(官民結合型)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절강성 현지조사에 기초한 黃祖輝等(2002)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절강성 내 2,667개 농민협동조직 중 농민주도형은 19.8%에 불과하고 80.2%가 정 부(농업부문, 과학기술협회, 기타 정부 부문)나 농업기업, 공급·판매합작사 (供銷社) 등 외부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공산당, 국무원은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을 위해 일련의 지원정책을 실시하였고, 지방정부도 재정, 대출, 세수, 건설용지, 전력공급, 등기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관주도의 성격이 강함.

- 중국 농민협동조직의 발기인 주체는 선도농민, 선도기업, 농업서비스 부문, 기층 정부 및 농촌집단경제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03년 말 호남성의 경우 전체 14,046개 농민협동조직 중 농촌지역 유력자혹은 대규모 전업농이 발기한 경우가 5,38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38.3%를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농업서비스 부문이 3,886개로 전체의 27.7%, 기층 정부나 농촌집단경제조직이 2,476개로 전체의 17.6%, 선도기업이 1,387개로 전체의 9.8%, 기타가 640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음(侯保疆, 2007).
- 중국 농민협동조직의 지역분포를 보면 조직의 수, 조합원 수, 평균 조합원 수 등에서 주요 농업지역인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안휘성, 하남성 등이 속 한 중부지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부지역, 서부지역 순임.
 - 농민협동조직의 발기인 주체로 보면 동부지역은 선도기업, 중부지역은 농촌 지역 유력자 혹은 대규모 전업농, 서부지역은 기층정부 혹은 농촌집단경제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4.4. 『농민전업합작사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 □ 『농민전업합작사법』은 1978년 시작된 농업개혁과정에서 정착된 농가토지도 급경영제의 토대위에서 농민들이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성장한 농민협동조직들에게 법률적으로 법인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정착된 농가토지도급경영 제는 과거 인민공사체제에서 농민들의 적극성이 발휘되지 않고, 노동생산성 이 저하되던 문제를 해결하였음. 그러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점차 내재 적인 문제점도 부각되었음.
 - 도급토지의 장기간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영세소농경영이 고착되었음. 소규모경영은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노동력 및 고정자본의 최적 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농업기계화, 전업화를 제약하고 농업기술의

보급과 사용에서 한계가 있음.

- 영세분산된 농민들은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시장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음. 또한 농민들은 조직화 정도가 낮아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장지배력이 약함.
- 1980년대 후반 이후 영세분산적인 농민들이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협동조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으로서의 법률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음.
 - 『농민전업합작사법』 제정 이전에는 일부는 기업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각각 공상(工商)부문과 민정(民政)부문에 등기하고, 일부는 중국과학기술협회(科協)나 농업부문에 등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전업합작사의 법인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법인등기, 세금납부, 자금대출, 권익보호 등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조성되고 전업합작사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음.
 - 법률 제정으로 전업합작사는 독립적인 시장주체로서 일반 회사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상(工商) 부문에 통일적으로 법인등기를 하고 다른 시장주체와 의 계약, 거래, 자금대출 등 일체의 생산 및 경영활동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었음.
-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농민협동조직의 성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및 자금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관주도로 성장하는 특성을 지님. 『농민전업합작사법』은 농민협동조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규범화된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법률은 제7장 지원정책에서 농업부문 국가투자사업의 위탁(49조),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재정지원(50조), 금융기관의 자금대출(51조), 세금혜택(52조) 등 의 조치를 통해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정책을 명시하였음.
- 법률은 특히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 빈곤지역의 농민협동조직과 국가 및 사회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협동조직을 우선적으

로 지원하도록 규정(50조)하고 있어 특히 서부지역에서 관주도형의 농민협 동조직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최대 빈곤지역인 서부지역은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이 가장 느린 곳으로 기층정부 혹은 농촌집단경제조직이 농민협동조직의 결성을 주도하는 관주도형 성장 특성이 가장 강한 지역임.
- 중국 동부, 중부 및 서부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여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은 동부지역의 경우 농민주도형, 중부지역의 경우 민관결합형, 서부지역의 경우 관주도형 발전 모델이 제시되고 있음(王新利, 李世武, 2007).
- □ 중국은 2006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장기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데 이어 2007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하나인 농업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은 농업현대화, 산업화 경영을 촉진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민전업합작사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중국에서 농민협동조직의 발전은 2006년 농업세 폐지 이후 새롭게 제시된 농업개혁 과제의 하나임. 농민들의 조직화는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정착으로 나타난 소규모 분산경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규모경제를 실현하고, 시 장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 농업부 농촌경제체제·경영관리국 정원카이(鄭文凱) 국장은 7월 6일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농민전업합작사는 전문화된 생산, 산업화 경영, 사회서비스, 표준화 실시라는 측면에서 자금과 기술, 정보 등 많은 요소를 집약하는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각종 농민전업합작사의 발 전을 통해 중국 농업·농촌경제를 광범위하게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기대 감을 표시하였음.

참고자료

曹兵兵. 2006. "農民專業合作社法解讀". 『中國人大』11: 15-18.

- 侯保疆. 2007. "我國農民專業合作組織的發展軌跡及其特點". 『農村經濟』 3: 123-126.
- 黄祖辉等. 2002. "农民专业合作组织发展的影响因素分析". 『中国农村经济』 3: 4-7.
- 郭慶海. 2007. "我國農民合作經濟組織產業分布差異解析". 『農業經濟問題』 4: 87-90.
- 馮海濱. 2007. "我國農民專業合作經濟組織發展趨勢分析". 『沈陽農業大學學報 (社會科學版)』9(3): 321-324.
- 全國人大農業與農村委員會課題組. 2004. 『農民合作經濟組織立法專題研究報告』.
- 全國人大農委法案室. 2006. "我國當前農民專業合作經濟組織的基本狀況". 『中國人大』11: 16-17.
- 王新利, 李世武. 2007. "農民專業合作經濟組織的發展分析". 『農業經濟問題』3: 15-19.
- 《人民日報》. 2007.7.8. "農業部負責人詳解《農民專業合作社法》四亮点".

(http://nc.people.com.cn/GB/5960706.html)

http://ks.cn.yahoo.com/question/1306111803885.html

5. 도농 통합발전 신특구 정책

5.1. 개요

- □ 2007년 6월 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경시와 성도시에 전국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통지'(國家發展改革委關于批準重慶市和成都市設立全國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驗區的通知; 發改經體[2007] 1248호)를 하달하여 중경직할시와 사천성 성도시를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로 선정하였음.
- '통지'는 이번 시범지구의 지정이 국무원의 동의와 비준을 거쳤음을 명확히 하고 "중경시와 성도시는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인 체제개혁을 실시하고, 중점 추진사항과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혁하여, 창의성을 발휘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도농 통합발전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도농간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시하였음. 또한 "전국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데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1980년 광동성 심천(深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커 다란 성과를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 정책을 계승하여 신특구로 불 리는 '국가 종합개혁 시범지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경직할시와 성도시로 선정된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는 2005 년 6월 상해 포동신특구(浦東新區), 2006년 5월 천진 빈해신특구(濱海新 區)에 이어 3번째로 지정된 신특구임.
- '국가 종합개혁 시범지구' 정책은 중국의 전통적인 개혁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개혁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일련의 중요한 개혁조치를 시험하고 이를 주변지역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중국이 과거 개혁개방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했던 경제특구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신특구 정책으로 불리고 있음.

- 이번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 선정에는 전국적으로 19개 지역이 신청을 하였으며, 2007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와 인민 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기간에 토론과 현지조사 등을 거쳐 중경시 와 성도시를 최종 확정하였음.
 - 시범지구 신청 지역은 광동성 심천(深圳), 중경직할시(重慶), 사천성 성도 (成都), 호남성 장시(長沙)·주주(株洲)·상담(湘潭) 도시권역, 호북성 무한 (武漢), 절강성 항주(杭州), 절강성 태주(台州), 안휘성 합비(合肥), 광서장 족자치구 북부만(廣西北部灣), 요녕성 심양북부신구(沈北新區), 요녕성 대련(大連), 절강성 영과(寧波), 광동성 광주개발지구(廣州開發區), 강소성 소주공업지구(蘇州工業園區), 하남성 정주·정동신구(鄭州鄭東新區), 신강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창길(昌吉) 행정지구, 내몽고자치구 호화 호특(呼和浩特)·포두(包頭) 지구, 흑룡강성 하얼빈(哈爾濱)·요녕성 대련(大連)·흑룡강성 제제합이(齊齊哈爾) 공업지구, 하북성 당산(唐山)지구 등 19 개 지역임.

5.2. 정책 추진 배경

-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문제가 후진타오 정부 가 주창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특 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방식 에 의한 도농 통합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 양웨이민(楊偉民)은 2007년 6월 9일 성도시에서 개최된 '중국경제 50인 포럼'의 발표문에서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시범지구' 정책 추진 이유를 ①이중경제구조의 개혁, ②조화로운 사회체제건설, ③중서부지역 발전 모델 모색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의 최종적인 목표는 농촌 주민과 농민공 및 그 가족들이 ①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도시주민들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②의무교육, 공공위생, 의료보장, 최저생활 보장 등 도시주민들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③수도, 전기, 교통, 통신 등 여러 방면에서 도시지역

과 동일한 생활조건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두고 있음.

- □ 경제특구 정책을 계승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중경시와 성도시를 신특구로 지정한 것은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동부 연해 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국무원이 중경시와 성도시를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로 선정한 것은 중서부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로서 후진타오 정부의 집정이데올로기인 과학적 발전관을 실천하고 조화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 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중경시와 성도시는 '대도시와 대농촌'이 병존하는 대형도시로 도농간 소득격 차가 크고, 전형적인 이중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 중경시는 공공재정체계, 호적제도, 토지의 관리 및 사용제도, 사회보장시스 템, 농촌시장체계, 행정관리시스템 등 6개 분야에서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성도시는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층 자치조직 건설, 산업발전, 행정관리 시스템, 인프라 건설 및 관리체계, 공공서비스체계, 사회보장시스템, 호적제도 등 8개 분야에서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5.3.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 1, 2차 시범지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각각 금융서비스업과 제조업 및 물류 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 것과는 달리 제3차 '국가 종합개혁 시범지구' 선정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도농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대화된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 제1차 상해 포동신특구, 현대화 된 제조업 및 물류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 제2차 천진 빈해신특구와 달리 이 번에 지정된 신특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외에 재정지원 및 각종 우 대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통지'에서는 중앙정부가 시범지구사 업 집행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지방정부는 창의적으로 개혁정

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 사업이 도농 통합발전 개혁경험을 전국에 전파하여 도농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동부 연해지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특구정책을 중서부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들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

참고자료

新華網. 2007.6.9. "中國首次設立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驗區".

『新京報』. 2007. 6.10. "重慶成都改革試驗區獲批".

이영준. 2007. "중국 제3의 신특구, 쓰촨성 청두시와 총칭직할시 동시 선정".

『KOTRA 중국 청두무역관 보고자료』(2007.6.12).

6. 2007년 주요 농업법규 및 규칙(規章)

중국은 2007년 한 해 동안 국무원을 비롯해 농업부 등 정부부처 명의의 농업 법규 26건, 농업부문 규칙 137건, 지방법규 58건을 발표하였음. 이하에서는 이들 법규, 규칙들 가운데 일부를 요약 소개함.¹⁵⁾

- □ 농지 점용세 일시시행 조례(耕地占用稅暫行條例)
 - 국무원령 제 511호, 2007.12.1.
 -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농지보호를 목적으로 농지를 점 용하여 집을 짓거나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 조례에 근거하여 농지 점용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 농지 점용세 과세 기준
 - 점유면적이 1무(0.067ha)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m²당 10~50위안
 - 점유면적이 1무 이상 2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당 8~40위안
 - 점유면적이 2무 이상 3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m²당 6~30위안
 - 점유면적이 3무를 초과한 경우: 1m²당 5~25위안
- 본 조례는 기본 농지에 대한 점용 이외에도 군사시설, 학교, 유치원, 양로원, 병원, 철도, 도로, 항만 등의 농지 점용과 농촌주민의 주택건설을 위한 농지 점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점용세 징수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 □ 식품리콜관리규정(食品召回管理規定)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 98호, 2007.8.27.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식품 안전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식품의 생산 감소 및 소비자의 건강과 안

^{15) 2007}년 발표된 농업법규, 규칙, 지방법규의 목록 및 내용은 중국 농업부 홈페이지(http://www.agri.gov.cn)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품품질법 產品質量法』,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식품 등 제품의 안전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등의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음.

- '규정'은 식품리콜(召回)을 "식품생산자가 생산과정의 문제로 인한 불안전 식품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교환, 환불, 설명 등의 방식으로 즉시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4조).
- '규정'은 1장 총칙(1~9조), 2장 식품안전 위해조사 및 평가(10~18조), 3장 식품리콜의 실시(19~33조), 4장 법률책임(34~41조), 5장 부칙(42~45조) 등 총 5장 45조로 구성되었음.
- '규정'은 제2장에서 식품안전 위해조사 및 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식품리콜을 식품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식품이 리콜대상에 해당하는 불안전식품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스스로 리콜을 실시하는 주동적 리콜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지방정부의 품질검사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리콜을 실시하는 책임 리콜로 구분하고, 리콜의 평가 및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있음.
- '규정' 제4장 법률책임에서는 리콜 대상 식품의 생산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주동적 리콜을 실시한 식품생산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경감하도록 명시하였음. 또한 식품생산자가 '규정'을 위반하고도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경고, 벌금부과, 법률 추궁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정'은 제5장 부칙에서 수출입 식품의 리콜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본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유권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퇴경환림 정책의 정비에 관한 통지(國務院關于完善退耕還林政策的通知) - 국발 國發[2007] 25호, 2007.8.9.

- 국무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퇴경환림 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퇴경 농가의 장기적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정비와 개선을 목적으로 본 '통지'를 하달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음.
- 생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실시한 퇴경환림 정책은 산림 및 초원 면적의 증가, 수토 유실 및 모래바람의 감소 등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음. 또한 퇴경 농가에 대한 식량 및 생활비의 직접보조는 정책 집행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퇴경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었음.
 - 그러나 퇴경 농가의 장기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량 및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퇴경 농가의 생계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퇴경 농가의 장기적인 생계문제 해결 방안
 - 식량 및 생활비 보조가 완료된 퇴경 농가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적절 한 현금보조를 지속하되, 보조금의 규모는 지역별로 정하고 생태림, 경제림, 초원 등으로 분류하여 보조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음.
 -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퇴경환림기금을 조성하여 서부지역, 북경-천진 모래바람지역 및 서부지역의 정책집행 권역에 속하는 중부지역 퇴경 농가들의 기초식량 공급에 필요한 농지(口糧田) 조성, 농촌 에너지자원 개발, 생태형 이민, 특수 빈곤지역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 □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國務院關于加强食品 等産品安全監督管理的特別規定)
 - 국무원령 제 503호, 2007.7.26.
- 중국 국무원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산·경영자, 관리감독 부문 및 지방정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각 관리감독 부문의 협조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본 '규정'을 제정하고 2007년 7월 26일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본 규정은 제품의 범위를 식품 외에 식용 농산물, 약품 등 인체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관계되는 제품으로 규정하였음. 또한 제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거하되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본 규정은 생산·경영자가 자신이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법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보조재료, 첨가제, 농업투입재의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표준 준수, 판매자의 입하 검사제도 도입, 공급상의 경영자격 검사 의무화, 수출입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결함이 있는 제품의 대 사회공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은 규정 위반시 제품의 가치에 따라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조상품을 제조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國務院關于在全國建立農村最低 生活保障制度的通知)
 - 국발國發[2007] 19호, 2007.7.11.
 - 개혁개방 이래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농촌지역 빈곤인구가 대폭 감소했지만 아직도 많은 빈곤인구가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원은 농촌지역 빈곤인구의 생활개선을 위해 '통지'를 하달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 '통지'는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 및 이의 실행은 농촌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점차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지방정부 책임제를 실시하여 시행 효과를 높이는 한편 각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재정능력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보장 기준과 보상범위를 확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신청, 심사, 비준, 공시, 자금지

원, 사후관리 등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의견(國務院關于促進畜牧業持續健康發展的意見)
 - 국발 國發[2007] 4호, 2007.1.26.
- 국무원은 중국의 축산업이 전통적인 축산업에서 현대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으며 축산업의 발전이 농업구조조정, 농가소득 증대, 식생활구조의 개선 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의견'을 하달하고 집행하도록 하였음.
- 중국의 축산업은 10·5계획 기간 생산능력이 향상되고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며 농업·농촌경제의 지주산업이자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음. 그러나이러한 성과에도 낙후된 생산방식, 비효율적인 산업구조, 규모화정도 미약, 시장경쟁력 약세,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의견'은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①축산업 지역배치의 최적화, 구조 조정 및 산업화 경영 등을 통한 축산업의 성장방식 전환, ②우량품종 육성체계 정비, 사료 생산체계 수립, 동물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보장체계의 수립 및 정비, ③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생산 및 가공, 시장출하, 수출입 등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관리감독 강화, ④정부의 지원 및 지도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음.

Ⅱ. 농업·농촌경제 동향

- 1. 2006년 중국 농업·농촌경제 동향
- □ 2004~2006년 3년 연속 식량증산
- 2006년도 식량 생산량은 4억 9,745만 톤으로 2004년 4억 6,947만 톤, 2005년 4억 8,402만 톤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2004~2006년 동안 각각전년 대비 9.0%, 3.1%와 2.8%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 2006년도 식량 생산은 하곡의 경우 파종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1억 1,380만 톤이 생산되었음. 올벼는 단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파종 면적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태풍 피해를 입어 전년 수준인 3,185만 톤 이 생산되었음. 추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3억 5,180만 톤이 생산되었음.
- 정부의 지속적인 농업지원 정책이 식량증산의 주요 원인의 하나임. 2006년 국가재정에 의한 식량직불금 규모가 전년대비 10억 위안 증가한 142억 위안에 달했음.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3.7억 위안 증가한 40.7억위안, 농기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3억 위안 증가한 6억 위안에 달했음. 또한 농자재에 대한 보조금이 125억 위안 증가하였음.
 - 2006년 전국 식량 파종면적은 1억 533만 ha로 전년대비 110만 ha가 증가하였음. 파종면적 증가에 의한 식량증산은 515만 톤으로 전체 증가분의 38%를 차지하였음.
- 식량주산지의 기상조건이 양호했고 우량 품종의 재배면적 증가로 단수도 증가하였음. 2006년도 식량작물의 단수는 4.725톤/ha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음. 단수 증가에 의해 증산된 식량은 830만 톤으로 전체 증가분의 62%를 차지하였음.

- □ 2006년 농민 1인당 순소득 3,587위안, 전년대비 7.4% 성장
- 2006년도 농민 1인당 순소득 증가의 주요 원인은 농외소득, 특히 사업 외소득 가운데 노무소득의 증가임. 노무소득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375위 안으로 순소득 증가분에 대한 기여율이 60%에 달함. 농민들의 노무소득 증가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속 성장에 힘입어 농촌노동력의 도시 취업이 증가한 결과임.
 - 2006년 3월 27일 국무원이 '농민공문제 해결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于解決 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을 하달한 이후 농민들의 도시취업 조건이 개선되었고, 농민공들의 임금수준도 향상되었음.
 - 2006년도 농촌인구 가운데 도시취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증가했음. 도시취업 인구는 전년대비 530만 명이 증가했으며, 농민공들의 월 임금수준도 전년대비 9.9% 증가했음.
- 2006년도 농민 1인당 순소득 증가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농업소득의 증가임. 면화, 당료(糖料)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증가했고 시장가격도 상승하여 농민 1인당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5.7%(62위안) 증가한 1,160위안을 기록하였음.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사업의 전개로 농촌지역 2, 3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이들 2, 3차 산업으로부터 얻는 겸업소득도 증가하고 있음. 2006년도 농민 1인당 2, 3차 산업으로부터 얻는 겸업소득은 전년대비 9.3% (35위안) 증가한 410위안임.
- 2006년 농민 1인당 이전소득은 전년대비 22.5%(33위안) 증가한 181위안임. 이 가운데 식량직불금, 우량종자 보조금, 대형농기계 보조금을 합한 금액은 29위안으로 전년대비 11위안 증가하였음.
- □ 농업·농촌경제 발전의 제약요인
- 경지면적의 지속적 감소

- 2006년 한 해 동안 건설용지 전환 16.7만 ha, 경지유실 3.6만 ha, 생태환경 복원 33.9만 ha, 농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 4만 ha 등 총 41.5만 ha가 감소했으며 이 중 30.6만 ha가 순감소하였음.

○ 도농 소득격차의 지속적 확대

- 최근 들어 일련의 소득증대 정책에 힘입어 농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 시 주민과 농민들의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6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1,759위안인 반면 농민 1인당 순소득은 3,587위안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5년의 3.22:1에서 3.28:1로 더욱더 확대되었음.

참고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7. 『2006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張淑英. 2007. "2006:農業與農村經濟發展引人注目". 中國信息報社(2007.3.2). (http://www.stats.gov.cn/tjfx/ztfx/tjgbjd/t20070301 402388610.htm)

2. 농산물 가격 동향

- 전국 31,000개 표본에 대한 농산물 생산자가격 조사 결과 2007년도 1~9월 농산물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하였음.
 - 경종작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6.2%, 3.6%, 26.8%, 8.4% 증가하였음.
 - 특히,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3/4분기 축산물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이 1~9월 농산물 생산자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
-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 전년 동기대비 7.7% 상승
 - 2007년 1~9월 주요 곡물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7.8% 상승했음. 이 중 밀은 5.1%, 쌀은 4.0%, 자포니카쌀은 1.0%, 조생종 인디카쌀은 6.8%, 만생종 인디카쌀은 7.3%, 옥수수는 14.5%, 대두는 6.3%, 서류는 3.9% 상승했음.
 - 분기별로 보면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은 1분기에 작년 동기대비 7.3% 상승 했으며,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7.6%, 8% 상승하였음.
- 면화 생산자가격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
 - 분기별로 보면 면화의 생산자가격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대비 3.5%, 0.9% 하락했으나, 3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4.9% 상승하였음.
 - 하북성, 신강위구르자치구 등 면화 주산지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9%, 6.7% 하락했고, 산동성과 하남성은 각각 2.3%, 0.6% 상승했음.
- 유지작물 생산자가격 전년 동기대비 24.3% 상승
 - 분기별로 보면 유지작물의 생산자가격은 1분기, 2분기, 3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대비 13.0%, 28.5%, 23.7% 상승하였음.
 - 2007년 1~9월 식용 유지종자(oilseed)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3% 상승하였으며, 땅콩은 13.4% 상승하였음.
 - 유지작물의 생산자가격 상승은 생산효율 저하, 농민들의 재배의향 면적과 실제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국내산에 대한 수요부족 등이 주요 원인임.

- 채소류 생산자가격 전년 동기대비 4% 상승, 과일은 2.1% 하락
 - 엽근채류와 과채류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7%, 7.4% 상승한 반면 양념채소류는 14% 하락하였음.
 - 바나나와 여지(荔枝)의 생산자가격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26.7%, 4.5% 하락하는 등 열대·아열대 과일의 가격 하락폭이 비교적 컸음. 배의 생산자가 격은 4.4% 하락한 반면 사과는 7% 상승하였음.
 - 과일 생산자가격 하락은 기온상승, 조숙, 이른 시장출하, 과수면적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임.
- 돼지 생산자가격 전년 동기대비 40.2% 상승
 - 축산물 생산자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6.8% 상승한 가운데 돼지 생산자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40.2% 상승하여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음. 분기별로 보면돼지 생산자가격은 1분기, 2분기, 3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대비 18.0%, 25.7%, 64.8% 상승하였음.
 - 육우, 양, 가금류, 가금류 알 생산자가격은 각각 11.4%, 13.8%, 15.7%, 14.9% 상승하였음. 우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하였음.

참고자료

國家統計局農村司. 2007.10.26. "前三季度全國農産品生産價格同比上漲17.4%". (http://www.stats.gov.cn/tjfx/ncpjg/t20071022 402440166.htm)

3. 농산물 무역 동향

□ 2007년 1~9월 농산물 무역 동향

- 농산물(경종작물, 축산물, 수산물) 수출입 총액은 55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
 - 수출액은 262.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수입액도 29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6% 증가하였음.
 -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커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적자액은 29.7 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2% 증가하였음.
- 곡물은 수출이 785.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7.9% 증가한 반면, 수입은 120.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8.3%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4.2배 증가한 665.1만 톤의 순수출을 기록했음. 2007년 1~9월 동안 주요 곡물의 수출입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쌀 상품(쌀, 쌀가루, 벼 및 종자용 벼 포함)의 수출은 87.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고, 수입은 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5% 감소하여 53.9만 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대비 44.4% 증가한 것임. 전체 쌀 상품 가운데 쌀(大米)의 수출입이 대부분으로 수출의 97.5%, 수입의 96.6%를 차지하였음.
 - 옥수수 상품(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 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 의 수출은 453.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7.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02만 톤으로 452.3만 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대비 1.02배증가한 실적임.
 - 밀 상품(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의 수출은 211.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4배 증가하고, 수입은 9.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1.6% 감소하여 202.5만 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대비 4.4배 증가한 실적임.
 - 보리 상품(보리, 보리가루, 가공보리와 종자용 보리 포함)의 수입은 75.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7.5% 감소하였음.

- 식용 유지종자(oilseed)는 수출이 95.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했으며, 수입도 2,257.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하였음. 대두 수출은 37.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3.3% 증가했고, 수입도 2,169.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음.
- 식용 식물유는 수출이 12.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8.0% 감소했으나 수입 은 619.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하였음.
 - 콩기름(大豆油) 수출은 5.3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0.7% 감소했으나, 수 입은 193.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0.0% 증가하였음.
 - 유채기름(菜籽油)의 수출은 1.9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2.3% 감소한 반면, 수입은 29.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1.0배 증가하였음.
 - 종려기름(棕榈油)의 수입은 387.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03% 감소하였음.
- 면화 수출은 1.6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0.9% 증가했으나 수입은 202.7 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8.4% 감소하였음. 식용당(食糖) 수출은 9.9만 톤 으로 전년 동기대비 28.5% 감소한 반면, 수입은 97.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 비 3.2% 증가하였음.
- 채소 수출은 590.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했고, 수출액은 44.8 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하였음. 채소 수입은 7.81만 톤으로 전 년 동기대비 19.1%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0.8억 달러로 14.9% 증가하였음.
- 과일 수출은 331.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6.5% 증가했고, 수출액도 24.8 억 달러로 55.1% 증가하였음. 채소 수입은 105.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했고, 수입액도 7.4억 달러로 25.2% 증가하였음.
- 축산물 수출은 29.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했고, 수입은 47.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0% 증가하였음. 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18.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배 증가하였음.
 - 돼지 상품(산돼지, 종돈, 돼지고기, 가공 돼지고기, 돼지 내장 포함)의 수출 은 6.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 감소한 반면 수입은 3.0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2배 증가하였음.

- 가금(家禽) 상품(가금육 및 내장, 가공 가금육, 기타 산가금, 종자용 가금 포함)의 수출은 7.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했고, 수입도 7.0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7배 증가하였음.
- 수산물 수출은 69.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했고, 수입은 36.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했음. 수산물의 무역수지 흑자는 3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음.

□ 2007년 1~9월 농산물 무역의 특징

- 농산물 무역규모 1위와 2위는 산동성과 광동성으로 각각 122.7억 달러와 82.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농산물 수출 실적 1위는 산동성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한 69.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위인 광동성은 수출액이 29.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하였음. 3위인 절강성의 수출액은 21.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음.
 - 농산물 수입실적 1위는 강소성으로 전년 동기대비 42.7% 증가한 54.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위인 광동성은 수입액이 53.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3.5% 증가하였음. 3위는 산동성으로 수입액이 53.0억 원이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것임.
- 중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은 아시아, 유럽이며, 최대 수입시장은 남미임.
- 아시아는 중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3대 수입시장으로 대 아시아 수출은 159.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2%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73.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하였음. 중국의 대 아시아 수출은 전체의 60.7%로 전년 동기대비 0.7% 포인트 감소했고, 수입은 전체의 25.1%로 전 년 동기대비 1.1% 포인트 증가하였음.
- 유럽은 중국 농산물의 제2대 수출시장이자 제4대 수입시장으로 대 유럽 수출은 4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33.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3% 증가하였음. 중국의 대 유럽 수출은 전체의

18.9%로 전년 동기대비 0.7% 포인트 증가했고, 수입은 전체의 11.6%로 전 년 동기대비 0.5% 증가하였음.

- 남미는 중국 농산물의 제5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수입시장으로 대 남미 수출 은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76.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2% 증가하였음. 중국의 대 남미 수출은 전체의 2.4%로 전년 동기대비 0.3% 포인트 감소했고, 수입은 전체의 26.2%로 전년 동기대 비 1.4% 증가하였음.
-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일반적인 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 200억 달러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고, 임가공 수출이 43.3억 달러로 전체의 16.5%, 위탁가 공조립 수출이 11.3억 달러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소규모 변경무역 방식이 4.4억 달러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음.
-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일반적인 무역방식에 의한 수입이 207.5억 달러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고, 임가공 수입이 35.7억 달러로 전체의 12.2%, 보세 창고반입 방식이 27.3억 달러로 전체의 9.4%를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위탁 가공조립 무역 방식에 의한 수입이 10.8억 달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음.

참고자료

中國農業部. 2007.11.2. "2007年前三季度我國農産品進出口情況". (http://www.agri.gov.cn/xxfb/t20071102 914941.htm)

4. 농민소득 동향

-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6.8만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2007년 1~9월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3,321위안으로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 현금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하였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임금소득은 1,139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하였음.
 - 그 중 노무소득이 1,01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0% 증가하였으며, 현지 노무소득은 58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1% 증가했고, 외지 노무소득은 43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4.1% 증가하였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은 1,429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하였음.
 - 그 중 경종작물의 판매소득은 786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했고, 임산물은 4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9%, 축산물은 552위안으로 전년 동 기대비 26.8%, 수산물은 52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0% 증가하였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겸업소득은 458위안으로 전년 동기대 비 11.7% 증가하였음.
 - 겸업소득의 내용을 보면 공업부문에서 얻은 소득이 95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고, 건축업은 5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7% 증가, 제 3차 산업은 31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하였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자산소득은 84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172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2% 증가하였음.

참 고 자 료

國家統計局綜合司. 2007.10.26. "前三季度農村居民人均現金收入實際增長14.8%". (http://www.stats.gov.cn/tjfx/jdfx/t20071026 402440124.htm)

Ⅲ. 정책자료

- 1. 농업·농촌경제 관련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1982~1986년까지 연속 5차례(5호 문건으로 지칭), 2004~2007년까지 연속 4차례 등 총 9차례에 걸쳐 농업·농촌경제 관련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 1982~1986년, 2004~2007년 발표된 9건의 '중앙 1호 문건'을 요약하여수록함.

☞ 1982. 1. 1 中共中央批轉《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

○ 전국적으로 90% 이상의 생산대(生產隊)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小段包工定額計酬,專業承包聯產計酬,聯產到勞,包產到戶,包產到組,包干到戶,包干到組)는 농업집단화 이전에 존재했던 사적소유에 기초한 개인경영과는 다르며 사회주의 형식의 생산책임제임.

☞ 1983. 1. 2 中共中央《當前農村經濟政策的若干問題》

-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978.12.18~22) 이후 중국 농촌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양한 형식의 농업생산책 임제가 농촌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생산량과 연계 된 농업생산책임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농업생산책임제와 각종 농촌개혁의 실시로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농업생산이 회복되었으며 자급 혹은 반자급경제에서 상품경제로,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이행하게 되었음.
- ㅇ 당면 농업정책 과제

- 각지의 자연자원조건, 경제적 조건, 기술조건에 맞게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유효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실현
- 농업구조 개혁, 농촌경제체제 개혁 및 기술 개혁을 실현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농업발전 방향 모색
- 농업, 임업, 목축업, 부업(副業), 어업의 발전과 농·공·상 종합경영의 실현
- 농업생산책임제(특히 생산량과 연동된 생산책임제)의 실시 및 안정적 발전
- 상품생산의 확대, 다양한 형식의 합작경제 발전
- 정사분리(政社分離)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민공사체제 개혁
- 농촌지역에서 자본, 기술, 노동력의 부분적인 유동 허용 및 이들 생산요소 간 다양한 방식의 결합 허용
- 상품 유통체계 개선, 상품생산의 발전, 도농 격차 및 지역간 폐쇄성 완화를 통한 유통경로의 다양화
- 농업기술 개선 및 연구보급체계 수립, 인력배양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
- 농촌개발사업의 추진, 농촌개발자금의 재원 다양화
- 적지적작, 비교우위, 집중화의 원칙에 기초하여 농업, 임업, 축산업, 부업, 어업의 상품생산기지 조성
- 국경지역, 산간지역과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빈곤 퇴치
- 삼림벌채, 경지면적 감소, 인구증가 억제 대책 실시

□ 1984. 1. 1 中共中央《關于一九八四年農村工作的通知》

- 1983년 '중앙 1호 문건'을 시행한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고, 제 시된 기본목표와 방침, 정책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후 일정한 시기에 농촌업무를 지도할 정식 문건을 채택하기 로 결정하였음.
 - 1984년 농촌업무의 중점은 농업생산책임제의 안정적 시행에 기초한 농업생산 증대, 유통경로의 정비, 상품생산의 발전임.
- ㅇ 당면 농업정책 과제
 - 토지도급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 하고 이를 통해 지력향상과 집약경영 실현

- 생산주기가 비교적 긴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과수원, 임지), 농지개간 및 개발이 필요한 토지(荒山, 荒地)에 대해서는 토지도급 기간을 추가 연장
- 농민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및 각종 비용의 부과 금지로 농민들의 부담 경감
- 진(鎮) 지역의 농촌공업 육성 및 임업, 축산업, 어업의 발전

☞ 1985. 1.1 中共中央、國務院《關于進一步活躍農村經濟的十項政策》

- 인민공사체제 해체 이후 농촌업무의 중점은 농업관리체제 개혁, 농산물 계획 수매·할당수매 제도 개혁, 농산물 수급의 시장조절 확대와 시장수요에 부응 한 농업생산 확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조정 등임.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
 - 농산물 계획수매·할당수매 제도의 폐지, 계약수매와 시장수매 병행
 - 농촌지역 산업구조조정, 식량생산 증대, 농업경영 방식의 다양화
 - 산간지역과 임업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농촌 교통사업 추진
 - 향진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세금혜택 등 지원정책 실시
 - 기술이전 및 인재 유동 촉진
 - 농촌 금융정책 활성화, 자금의 유통효율 증대
 - 농촌 합작경제의 발전
 - 도농간 교류확대를 통한 소도시(小城鎮) 건설 확대
 - 대외무역 및 기술교류 확대

□ 1986. 1. 1 中共中央, 國務院《關于一九八六年農村工作的部署》

- > 농촌지역에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를 실시하고 1985년에 농산물 계획수매·할 당수매제도 개혁, 농촌지역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었
 으며 전체 국민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음.
 - 최근 농업의 고속성장은 개혁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결과 이며 향후 지속적인 농업성장과 발전은 정책의 안정성 제고 및 개선, 농민들 의 생산의 적극성 제고, 농업생산조건의 개선에 달려있음.

- 1986년도 주요 당면과제
 - 농업을 기초로 하는 경제발전전략 재확립,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지위보장
 - 과학기술 발전, 요소투입 증대로 농업생산의 안정적 성장
 - 농촌개혁의 보완 및 심화: 식량 계약수매제도 보완, 성간 식량유통 조절, 다양한 형식의 채소 및 부식품 도매시장 건설, 식품가공 부문의 원료농산물 생산기지에 대한 서비스 확대(농민과 가공공장 간 계약 체결 등), 유통경로의다양화
 - 작물 식부체계 개선 과정에서 식량작물과 경제작물의 적절한 조화: 식량생산 보장 및 경제작물, 축산업, 임업, 어업의 발전, 농촌공업(향진기업), 건축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의 발전을 통한 농촌경제의 발전 및 소득 보전
 - 상품생산 확대를 위해 우량종자, 생산기술, 가공, 저장 및 운송, 판매 등에 대한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합작조직 건설
 - 균부론(均富論)의 기초 위에서 선부론(先富論) 승인,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 초위에서 사영경제 발전 허용
 - 빈곤지역의 빈곤 퇴치

☞ 2004. 2.8 中共中央, 國務院《關于促進農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見》

- 최근 농업·농촌 발전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 문제임.
 - 전국 농민 1인당 순소득의 증가속도가 완만하고 특히 식량주산지 농민의 소 득증가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많은 전업농의 순소득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농민소득의 정체는 농민들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량생산 과 농산물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침. 또한 농촌경제의 발전을 제약할 뿐만 아 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도 제약하고 있음.
 - 농민소득의 정체는 농촌사회의 진보뿐만 아니라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건설 목표의 실현과도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경제문제이자 정치문제이기도 함.
-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주요과제

- 식량주산지의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확대, 식량생산 농민들의 소득증대: 식량주산지의 식량 생산능력 제고 및 식품가공업의 발전 지원, 식량주산지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농업종합개발자금, 토지개량기금 등 확대
-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농업내부의 소득증대 잠재력 확충: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농업의 산업화경영 촉진, 농업분야 R&D 확대 및 농업기술 보 급 확대
- 농촌지역 2, 3차 산업의 발전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원 확충: 향진기업 개혁 및 조정, 농촌지역의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 발전, 소도시(小城鎮) 경제 의 발전
- 농민들의 도시취업 환경 개선을 통한 겸업소득 증대: 도시취업 농민의 합법 적 권익 보장, 농촌노동력의 직업훈련 강화
-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주체(유통 기능인) 육성,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확대
- 농촌 기초시설 건설 확대를 통한 농민들의 소득증대 여건 조성: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재정투자 증대, 농업 및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 확대
- 농촌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와 농민들의 제부담 경감: 토 지수용 및 토지보상제도 개혁, 식량유통제도 개혁, 농촌세제 개혁, 농촌금융 체제 개혁
- 농촌지역의 빈곤 퇴치로 빈곤가구 및 재해가구의 생활수준 향상

□ 2005. 1. 31 中共中央,國務院《關于進一步加強農村工作提高農業綜合 生產能力若干政策的意見》

- 2004년 한 해 동안 식량생산에서 중요한 전기기 마련되었으며 농민들의 소득
 이 빠르게 증가하고 농촌개혁이 심화되는 등 농촌업무의 추진에서 많은 발전
 이 있었음.
 - 그러나 농업은 여전히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낙후되었고 농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농업생산 및 생활기초시설도 빈약한 상황임. 또한 장기적으로 식량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고,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며 낙후된 농촌경제사회의 근본적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주요 당면과제

-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 농민들의 적극성 견인: 농업세 감면, 농업특산 세(담배잎 제외) 폐지(2가지 감면(兩減免)), 식량생산농가에 대한 직접보조, 일부지역 농민들에 대해 우량종자 보조 및 농기계 구입 보조(3가지 보조(三補貼)), 식량주산지에 대한 지원 확대, 농업부문 투자 지원체계 확립
- 엄격한 농지보호제도 실시, 농지의 비옥도 향상: 엄격한 농경지 보호, 토지 도급경영제의 철저한 관철, 농경지의 비옥도 및 지력 향상
- 논 수리관개체계의 강화로 자연재해 대비능력 향상: 절수식 대규모 수리관개 체계 건설, 소형 수리시설 건설, 농업 생태환경 복구
-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 개발능력 제고, 우량종자의 보급 확대,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개선
- 농촌 기초시설 건설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 및 생활환경 개선: 소형 기초시설 건설 확대, 농산물 유통 및 검사·측정 설비 확충, 우량종자 육성체계, 농업기 술 개발 및 응용체계, 동식물 보호체계, 농산물 품질안전체계, 농산물 시장정 보체계, 농업자원 및 생태보호체계, 농업사회화 서비스 및 관리체계 등 7대 체계 건설
- 농업·농촌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 식량증산, 희귀농산물 생산 증대, 축산업 발전, 식량주산지의 식품가공업 발전 지원, 농업산업화경영 촉진
- 농촌 투융자체계 개혁 및 정비: 투자관리체계의 완비, 농촌 소형기초시설의 재산권제도 개혁, 농촌 금융제도 개혁
- 농민들의 소질 향상: 농민들에 대한 직업기능훈련 실시, 교육, 위생, 문화 등 농촌사회사업 추진

☞ 2006. 2. 21 《中共中央國務院關于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

-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05.10.8~11)에서 통과된
 '11.5계획'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최근 들어 일련의 농업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이 2년 연속 대폭 증가하였으며 농민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하였고 농촌 세제개혁도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농업과 농촌은 아직도 기초시설이 빈약하고 농촌사회사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도농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삼농문제는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
 - 농업현대화: 현대적인 유통체계 건설, 식량생산의 안정적 발전, 농업구조조정 촉진, 농업산업화경영 촉진, 순화농업의 발전
 - 농민들의 소득증대: 농민들의 소득원 다양화, 도시취업 농민들의 합법적 권 익 보호,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정책의 개선, 빈곤 퇴치 정책 강화
 - 농촌 기초시설 건설 확대: 논 수리관개시설 정비, 토지의 비옥도 향상 및 생 태환경 복구, 향·촌의 기초시설 건설 확대, 마을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
 - 농촌 사회사업의 발전: 농촌 의무교육제도의 발전, 농민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농촌 위생서비스 개선, 농촌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 농촌개혁의 심화: 농촌 세제개혁(농업세 폐지 등)을 중심으로 농촌 종합개혁 추진, 농촌 금융개혁 추진 등
 - 농촌지역 민주화의 진전: 농촌 기층 당조직의 역할 강화, 농민들의 민주적 권 리 보장, 신형 사회서비스조직 육성

☞ 2007. 1. 29 《中共中央國務院關于積極發展現代農業扎實推進社會主義 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

- 농업현대화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농민소득 증대, 농업 생산능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며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산업적 기초임.
 - 농업현대화 과정은 곧 전통농업의 개조과정이자 생산력의 발전과정이며 또한 농업성장방식을 전환하고 농업생산의 고속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임.
- ㅇ 농업현대화를 위한 주요 당면과제
 - 농업현대화 촉진을 위한 투자보장체계 확립: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투자확대, 보조금제도 개선, 농업재해 예방시스템 확립
 - 농업 기초시설 건설 확대로 시설장비율 제고: 논 수리관개시설 정비 및 개선,

토지비옥도 향상, 농촌 청정에너지원 개발, 향·촌의 기초시설 건설 확대, 현대적인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 순환농업, 생태농업, 유기농업의 발전

-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 개발체계 확립, 농업기술의 농가보급 확대, 자원절 약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농업기계화 및 농업정보화체계 수립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식량생산의 안정적 발전, 양식업의 발전, 희귀농산 물 생산 증대, 농업산업화 선도기업 지원
- 농촌시장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시설 건설 및 신형 유통업의 발전,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및 시장서비스 강화, 농산물 수출입 조정, 시장유통주체의 다원화
- 농민들의 소질 향상: 현대적인 농업경영주체 육성, 농민들의 농외취업 훈련 및 권익보호 강화, 농촌사회사업의 발전, 농촌공공서비스 담당자의 능력제고
- 농촌개혁의 심화: 부채 탕감, 농민협동조직(농민전업합작조직)의 발전

2. 『물권법』 농업관련 부분

주석령 제62호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포하고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 2007년 3월 16일

제 1편 총 칙

제1장 기본워칙(1~8조)

제2장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

제1절 부동산 등기(9~22조)

제2절 동산(動産)의 인도(23~27조)

제3절 기타 규정(28~31조)

제3장 물권의 보호(32~38조)

제 2편 소유권

제4장 일반규정

- 제39조 소유권자는 본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 제40조 소유권자는 본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의 설정 권리를 보유한다.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는 권리행사 시 소유권자의 권익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 제41조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 및 동산은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제42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하는 권한과 수속에 따라 집단소유의 토지와 단위 또는 개인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집단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토지보상비, 이주보조비와 지상부착물 및 재배 중인 농작물의 보상비 등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피수용

지 농민의 사회보장비용과 생활을 보장하며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단위 또는 개인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철거 및 이전 보상을 하고, 피수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주택을 수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추가하여 피수용자의 거주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수용보상비 등 비용을 횡령, 유용, 자의배분, 유보 및 체불을 해서는 안된다.

- 제43조 국가는 경지에 대해 엄격한 보호를 실시하고 농용지의 건설용지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건설용지의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 차를 위반하여 집단소유의 토지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 제44조 위험·재난구조 등 긴급사태 발생시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나 개인의 부동산 및 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피수용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위 또는 개인의 부동산 및 동산이 수용되거나 또는 수용된 후에 훼손, 멸실된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

제5장 국가소유권, 집단소유권 및 개인소유권

- 제45조 법률이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소유, 즉 전인민소유에 속한다. 국유재산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법률 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 제46조 광물자원, 하천 및 해역(海域)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 제47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법률이 국가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농촌 및 도시교외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 제48조 삼림, 산악, 초원, 황무지 및 간석지 등의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단, 집단소유에 속한다고 법률이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제49조 법률이 국가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야생 동식물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 제50조 무선전신 주파수스펙트럼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 제51조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한 문물(文物)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 제52조 국방자산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철도, 공공도로, 전력시설, 전신시설 및 석유·가스파이프라인 등의 사회간 접자본 시설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 제53조 국가기관은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서 점유, 사용 및 법률과 국무원의 관계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 제54조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단위는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및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익 및 처분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 제55조 국가가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무원 및 지방 인민정부가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로서의 직책을 이 행하고 출자자로서의 권익을 향유한다.
- 제56조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해, 탈취, 자의 배분, 유보,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57조 국유재산의 관리, 감독직책을 이행하는 기구 및 그 직원은 법률에 의거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의 가치보전과 가치증 가를 촉진하며 국유재산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태만으로 국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기업재편, 합병분할, 거래 등의 과정에서 염가양도, 횡령공모, 무단 담보설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58조 집단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이 포함된다.
 - 1. 법률이 집단소유로 규정하는 토지 및 삼림, 산악, 초원, 황무지 및 간석지
 - 2. 집단소유의 건물, 생산시설, 논 수리시설
 - 3. 집단소유의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및 체육 등의 시설
 - 4. 집단소유의 기타 부동산 및 동산
- 제59조 집단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은 당해 집단 구성원의 집단소유에 속한다. 다음 각 호에 열거되는 사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당해 집단 구성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 1. 토지도급 방안 및 당해 집단 이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토지도급권 부여
 - 2. 개별 토지도급경영자 간 도급토지의 조정
 - 3. 토지보상비 등 비용의 사용 및 분배 방법
 - 4. 집단이 출자하는 기업의 소유권 변동 등 사항
 - 5.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

- 제60조 집단이 소유하는 토지와 삼림, 산악, 초원, 황무지 및 간석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행사한다.
 - 1. 촌(村) 농민집단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 원회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 2. 촌내 2개 이상의 농민집단이 소유하는 경우, 촌내 당해 각 집단경제조 직 또는 촌민소조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 3. 향(鄕)·진(鎭) 농민집단의 소유인 경우, 향·진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 제61조 도시의 집단소유 부동산 및 동산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이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 제62조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촌민소조는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 촌민 규약에 의거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집단재산의 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 제63호 집단소유의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해, 탈취, 자의 분배,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집단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침해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4조 개인은 합법적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기구, 원재료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향유한다.
- 제65조 개인의 합법적 저축, 투자 및 기타 수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률 규정에 의거 개인의 상속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 제66조 개인의 합법적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해, 탈취,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67조 국가, 집단 및 개인은 법률에 의거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국가, 집단 및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동산이 기업에 투자된 경우, 출자자는 약정 또는 출자비율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 정책결정 및 경영관리자의 선정 등 권리를 향유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 제68조 기업법인은 본인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에 의 거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기업법인 이외의 법인 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동산의 권리에 대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정 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9조 사회단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소유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장 부동산 소유주(業主)의 건축물 구분소유권(70~83조)

제7장 인접(相隣)관계(84~92조)

제8장 공유(93~105조)

제9장 소유권의 취득 관련 특별 규정(106~116조)

제 3편 용익(用益)물권 16)

제10장 일반 규정

- 제117조 용익물권자는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법률에 의거 점유하고 사용하며 수익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 제118조 국가소유 또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집단이 사용 중인 자연자원 및 법률이 집단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한 자연자원에 대해 단위나 개인은 법률에 의거 점유하고 사용하며 수익할 수 있다.
- 제119조 국가는 자연자원의 유상(有償) 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0조 용익물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원 보호와 합리적 개발이용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권자는 용익물권자의 권리행사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 제121조 부동산 및 동산이 수용, 징용됨에 따라 용익물권이 소멸되거나 또는 용익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용익물권자는 제42조, 제44조 규정에 의거 상응하는 보상의 취득 권리를 보유한다.
- 제122조 법률에 의거 취득한 해역(海域)사용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 제123조 법률에 의거 취득한 탐광권(探鑛權), 채광권(菜鑛權), 취수권(取水權)과 수역(水域), 해안을 사용한 양식 및 어로(漁勞)에 종사하는 권리는 법적

¹⁶⁾ 용익권(用益權)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일종의 이용권리로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농가택지사용권 등이 있다. 임대 주택이나 임대공 장도 용익물권에 포함되며 점유, 사용, 수익의 권리는 있으나 처분권이 없는 제 한 물권임.

보호를 받는다.

제11장 토지도급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

- 제124조 농촌집단경제조직은 농가도급경영을 기초로 쌍충경영제도를 실시한다. 농민집단소유와 농민집단이 사용하는 국가소유의 경지, 임지, 초지 및 농업에 사용되는 기타 토지는 법에 의거 토지도급경영제도를 실시한다.
- 제125조 토지도급경영권자는 법률에 의거 본인이 도급경영하는 경지, 임지 및 초 지 등을 점유하고 사용하며 수익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재배업, 임업, 축 산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 제126조 경지의 도급기간은 30년, 초지는 30년에서 50년, 임지는 30년에서 70년 으로 한다. 특수 수림(林木)의 임지 도급기간은 국무원 임업부문의 인가 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도급기간 만기 후, 토지도급 경영권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도급을 계속할 수 있다.
- 제127조 토지도급경영권은 토지도급경영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설정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도급경영권자에게 토지도급경영권증, 임권증(林權證), 초원(草原)사용권증을 발행하고 등기하며 기록함으로서 토지도급경영권을 확인한다.
- 제128조 토지도급경영권자는 『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도급경영권을 전환 도급, 교환, 양도 등의 방식으로 유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동기간은 도급의 잔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급토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29조 토지도급경영권자가 토지도급경영권을 교환, 양도할 때 당사자가 등기를 요구할 경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토지도급경영권의 변경등 기를 신청해야 한다. 미등기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30조 도급기간 내에 도급수여자(村)는 도급토지를 조정할 수 없다. 자연재해로 도급토지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도급경지 및 초지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촌토지도급법』등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131조 도급기간 내에 도급수여자(村)는 도급토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농촌토 지도급법』등 법률에 별도 규정된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 제132조 도급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응하는 보상의 취득 권리를 보유한다.

- 제133조 입찰, 경매 및 공개합의 등의 방식을 통해 황무지 등 농촌토지를 도급받는 경우, 『농촌토지도급법』등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도급경영권에 대해 양도, 출자, 저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동시킬수 있다.
- 제134조 국가소유의 농용지(農用地)를 도급경영하는 경우 본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2장 건설용지 사용권(135~151조)

제13장 농가택지(宅基地) 사용권

- 제152조 농가택지사용권자는 법률에 의거 집단소유의 토지에 대해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 및 그부속시설을 건설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 제153조 농가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와 양도는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국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4조 농가택지가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농가택지사용권은 소멸된다. 농가택지를 상실한 촌민에 대해서는 새로 농가택지를 분배하여야 한다.
- 제155조 등기된 농가택지사용권이 양도 또는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장 지역권17)(156~169조)

제 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 규정(170~178조) 제16장 저당권 제1절 일반 저당권(179~202조)

¹⁷⁾ 지역권(地役權)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거주 등 편의성을 증진하는 권리를 말함.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들면, 베란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대면하는 토지소유자와 건물건설 보류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면 조망권 등 지역권의 행사가 가능함.

- 제180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 권리를 보유하는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 1. 건축물과 기타 토지의 부착물
 - 2. 건설용지사용권
 - 3. 입찰, 경매 또는 공개합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황무지 등의 토지도 급경영권
 - 4.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제품
 - 5. 건조 중인 건물, 선박, 항공기
 - 6. 교통 운송수단
 - 7. 법률, 행정법규가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지 않는 기타 재산 저당권설정자는 전항에 열거한 재산을 동시에 저당할 수 있다.
- 제181조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거쳐 기업, 개인 상공업자 및 농업생산·경영자는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하는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및 제품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의 실현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저당권 실현시 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184조 다음 각 호에 열거되는 재산은 저당할 수 없다.

- 1. 토지소유권
- 2. 경지, 농가택지, 자류지(自留地), 자류산(自留山) 등 집단소유의 토지 사용권. 단, 법률이 저당을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학교, 유치원 및 병원 등 공익 목적의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사회공익시설
- 4.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 5. 법률에 의거 봉쇄, 차압, 감독 관리를 받는 재산
- 6. 법률, 행정법규에 저당권 설정 금지로 규정된 기타 재산
- 제189조 기업, 개인 상공업자 및 농업생산·경영자가 제181조에 규정된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자 주소지의 공상(工商) 부문에서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설정된다. 미등기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 제201조 제18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도급경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제183조의 규정에 의거 향진기업이나 촌영기업(村營企

業)의 공장건물 등 건물 점거 범위 내의 건설용지사용권에 저당권을 동시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을 실현한 후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 유권의 성질과 토지용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2절 최고액저당권(근저당권)(203~207조)

제17장 질권(質權)

제1절 동산질권(動産質權)(208~222조) 제2절 권리질권(權利質權)(223~229조) 제18장 유치권(留置權)(230~240조)

제 5편 점유

제19장 점유(241~245조)

제 6편 부칙 (246~247조)

제247조 본 법률은 2007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중국투자뉴스(0426-49), 2007. 4. 26(금) No. 49 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음.

3. 『농민전업합작사법』전문

주석령 제57호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이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 2006년 10월 31일

제1장 총칙

- 제1조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을 지원 및 인도하고, 농민전업합작사의 조직과 행위를 규범화하며, 농민전업합작사와 그 조합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농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농민전업합작사는 농가도급경영의 기초 위에서 동일 품목 농산물의 생산·경영 주체나 동일한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조직이다. 농민 전업합작사는 조합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농자재의 구매, 농산물의 가공, 운송, 저장 및 판매 그리고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농민전업합작사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조합원은 농민을 주체로 한다.
- 2.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전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 3.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한다.
- 4. 조합원의 지위는 평등하며,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 5. 잉여금은 조합원과 농민전업합작사의 거래량(거래액)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다.

제4조 농민전업합작사는 본 법률에 의거하여 등기하고, 법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농민전업합작사는 조합원의 출자, 공동적립금,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지불금, 타인의 증여 및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타 자산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점유, 사용 및 처분의 권리를 가지며 상술한 재산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5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은 자신의 구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공동적립금의 몫에 한정하여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제6조 국가는 농민전업합작사와 그 조합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 제7조 농민전업합작사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법률, 행정법규 및 사회공 중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 국가는 재정지원, 세금혜택과 함께 금융, 과학기술, 인력 지원 및 산업정책 등의 조치를 통해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사회 각 부문이 농민전업합작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 제9조 현 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부문과 기타 유관부문 및 유관조직을 연계하여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의거하여 농민전 업합작사의 건설과 발전에 대하여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장 설립과 등기

제10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본 법률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부합하는 5명 이상의 조합원
- 2. 본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
- 3. 본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기관)
-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명칭과 정관이 확정한 주소
- 5. 정관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합원의 출자
- 제11조 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기인이 참가하는 설립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설립시 자발적으로 해당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발기인이 된다. 설립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 1. 농민전업합작사의 정관을 통과시키되 전체 발기인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야 한다.
 - 2. 이사장, 이사, 집행감사, 감사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3.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 1. 명칭과 주소
- 2. 업무범위
-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
-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5. 조직기구 및 그 구성 방법, 직권, 임기, 의사규칙
- 6. 조합원의 출자방식과 출자액
- 7. 재무관리와 잉여금의 분배, 손실보전
- 8. 정관 개정 절차
- 9. 해산 사유와 청산 방법
- 10. 공고사항 및 발표방식
- 11. 규정을 필요로 하는 기타 사항

제13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공상(工商) 행정관리 부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1. 등기신청서
- 2. 전체 발기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설립총회 회의록
- 3. 전체 발기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정관
- 4. 법정 대표, 이사의 임면 문건 및 신분증명서
- 5. 출자 조합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출자명세서
- 6. 주소사용 증명
-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서류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등 기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농민전업합 작사의 법정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농민 전업합작사의 등기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을 따른다. 등기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3장 조합원

제14조 민사 행위능력을 지닌 공민(公民)과 농민전업합작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

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농민전업 합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농민전업합작사의 정관을 준수하며, 정관이 규정한 가입 수속을 이행한 경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이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사무관리 직능 단체는 농민전업합작사에 가입할수 없다. 농민전업합작사는 조합원 명부를 구비하고, 등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 가운데 농민이 적어도 80%를 차지해야 한다. 조합원 수가 20인 이하이면 하나의 기업, 사업단체 혹은 사회단체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20명을 초과하면 기업, 사업단체 혹은 사회단체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조합원 총회에 참가할 수 있고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 관 규정에 따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해 민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 2. 농민전업합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생산·경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3. 정관의 규정 혹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잉여금을 배당받는다.
 - 4. 농민전업합작사의 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원 총회 혹은 조합원 대의 원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재무회계 보고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5. 정관이 규정한 기타 권리
- 제17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 총회의 선거와 표결에서 일인일표제를 실시하며 조합원은 각자 한 표의 기본표결권을 가진다. 출자액 혹은 농민전업합작사와의 거래량(액)이 비교적 많은 조합원은 정관 규정에 따라 추가로표결권을 가질 수 있다. 합작사의 추가표결권의 총 수는 농민전업합작사조합원의 기본표결권 총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표결권을 갖는 조합원과 추가표결권의 수는 매회 조합원 총회 개최시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고지한다. 정관은 추가표결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 1. 조합원 총회, 조합원 대의원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의 집행
- 2. 정관 규정에 따라 농민전업합작사에 출자
- 3. 정관 규정에 따라 농민전업합작사와 거래 진행

- 4. 정관 규정에 따라 손실 책임
- 5. 정관이 규정한 기타 의무
- 제19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회계연도 마감 3개월 전에 이사장 혹은 이사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기업, 사업단체 혹은 사회단체 조합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회계연도 마감 6개월 전에 탈퇴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탈퇴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정지된다.
- 제20조 조합원은 자격이 정지되기 이전에는 농민전업합작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한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농민전업합작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1조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에게 농민전업합작사는 정관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의 구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공동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기 이전의 분배가능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본 법률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해주어야 한다.

제4장 조직기구

- 제22조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 총회는 농민전업합작사의 권력기구로 서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 1. 정관의 수정
 - 2. 이사장, 이사, 집행감사, 감사회 구성원의 선출과 파면
 - 3. 중요한 재산의 처리, 대외투자, 대외담보와 생산·경영활동 중의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
 - 4. 연도 업무보고, 이익분배 및 손실처리 방안의 비준
 - 5. 합병, 분할, 해산, 청산에 대한 결의
 - 6. 경영관리 및 전문 기술인력의 수, 자격, 임기에 대한 결정
 - 7. 이사장 혹은 이사회의 조합원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 8.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권리
- 제23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선거와 결의시에는 전체 조합원 표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

관 개정 또는 합병, 분할 및 해산 결의시에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이 표결권 수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에따른다.

- 제24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 총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개최해야 하며, 회의의 소집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일이내에 임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1. 30% 이상 조합원의 제의
 - 2. 집행감사 혹은 감사회의 제의
 - 3. 정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 제25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 수가 150명을 초과하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합원 대의원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일부 혹은 전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6조 농민전업합작사는 이사장 1명과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이사장은 농민전업합작사를 대표하여 법정 대표인이 된다. 농민전업합작사는 감사 혹은 감사회를 둘 수 있다. 이사장, 이사, 경리, 재무회계 담장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이사장, 이사, 감사 혹은 감사회 구성원은 조합원 가운데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본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조합원 총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회 및 감사회 회의의 표결시 일인일표제를 실시한다.
- 제27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 총회, 이사회, 감사회는 의사사항의 결정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조합원, 이사,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 제28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이사장 혹은 이사회는 조합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경리, 재무회계 담당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사장 혹은 이사는 경리를 겸임할 수 있다. 경리는 정관 규정 혹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경리는 정관의 규정과 이사장 혹은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구체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책임진다.
- 제29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이사장, 이사, 관리 간부들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다.
 - 1. 농민전업합작사 자산의 침해, 남용 및 사적이용
 - 2.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농민

- 전업합작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출하거나 농민전업합작사의 자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3. 타인과 농민전업합작사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차지하는 행위
- 4.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제적인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기타 활동의 참여이사장, 이사와 관리 간부가 상기 조항을 위반하여 얻은 수입은 농민전업합작사 소유로 귀속하며, 농민전업합작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 제30조 농민전업합작사의 이사장, 이사, 경리는 업무의 성격이 동일한 타 농민전 업합작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경리를 겸임할 수 없다.
- 제31조 농민전업합작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자는 농민전업합작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경리 혹은 재무회계 담당자가 될 수 없다.

제5장 재무관리

- 제32조 국무원 재정부문은 국가의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농민전업합작회사의 재무회계 제도를 제정한다. 농민전업합작사는 국무원 재정부문이 제정한 재무회계 제도에 따라 회계를 진행한다.
- 제33조 농민전업합작회사의 이사장 혹은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연도 업무보고, 잉여금 분배 및 손실처리 방안, 재무회계 보고 내용을 준비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 15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4조 농민전업합작사는 조합원과의 거래와 농민전업합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하는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 제35조 농민전업합작회사는 정관의 규정 혹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 적립금을 공제하여 손실보전, 확대재생산, 전환출자에 사용하도록 하며, 공제된 적립금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몫으로 환산한다.
- 제36조 농민전업합작사는 조합원 개개인의 출자 구좌를 개설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농민전업합작사 조합원의 출자액

- 2. 농민전업합작사 조합원의 적립금 환산 몫
- 3. 농민전업합작사 조합원과 농민전업합작사의 거래량(액)
- 제37조 손실보전과 적립금을 공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농민전업합작사의 분배 가능한 잉여금이 된다. 분배 가능한 잉여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 개 반환 혹은 배당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분배 방법은 정관의 규정 혹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1. 조합원과 농민전업합작사의 거래랑(액) 비율에 따라 반환 혹은 배당 총액은 분배가 가능한 잉여금의 60%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 2. 상기 조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혹은 배당을 실시하고 남는 잉여금은 조합원 구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환산 몫, 농민전업합작사가 국 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기부받은 재산의 환산 몫 비율에 따라 조합원 에게 분배한다.
- 제38조 집행감사 혹은 감사회를 두고 있는 농민전업합작사는 집행감사 혹은 감사회가 합작사의 재무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합원 총회는 회계감사기관에 합작사의 재무회계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합병, 분할, 해산과 청산

- 제39조 농민전업합작사의 합병시에는 합병을 결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합병시의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조직이 계승한다.
- 제40조 농민전업합작사의 분할시에는 합작사의 재산도 그에 상응하게 분할해야 하며 분할을 결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할 이전의 채무는 분할 후의 조직이 계승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41조 농민전업합작사는 다음의 이유로 해산할 수 있다.
 - 1. 정관이 규정한 해산사유 발생
 - 2. 조합원 총회의 해산 결의
 - 3. 합병 혹은 분할에 의한 해산
 - 4.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파기
 - 제1항, 제2항, 제4항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총회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들로 청산팀을 구성하여 해산에 필요한 청산을 시작한다. 기한을 넘겨 청산팀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과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을 진행할 청산팀을 구성하는 조합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조합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 제42조 청산팀은 구성되는 날로부터 농민전업합작사를 접수 관리하며 미결 업무 처리와 청산을 책임지고, 재산과 채권, 채무를 정리하며 잉여재산을 분배 한다. 또한 농민전업합작사를 대표하여 소송, 재판 또는 법률적인 절차에 참여하며, 청산을 마감할 때 등기를 말소한다.
- 제43조 청산팀은 구성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과 채 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규정된 기간내에 전체 조합원과 채권자가 모두 통지를 받았다면 청산팀의 공고의무는 면제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는 채권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에 대해 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채 권 신고기간에 청산팀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 제44조 농민전업합작사는 본 법률 제41조 제1항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거나 인민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때에는 조합원의 탈퇴 수속을 할 수 없다.
- 제45조 청산팀은 농민전업합작사 직원의 임금 및 사회보험료의 청산, 미납 세금 과 기타 채무, 잉여재산의 분배 등의 청산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확인을 거친 후 실시한다. 청산팀은 농민전업합작사의 재산이 채무청산액보다 적을 경우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 제46조 농민전업합작사가 국가재정의 직접적인 보조를 받아 축적한 재산은 해산 또는 파산 청산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은 국무원 이 정한다.
- 제47조 청산팀의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청산 의무를 이행하고,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농민전업합작사의 조합원과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제48조 농민전업합작사의 파산시에는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단, 파산시의 재산은 파산 비용과 채무를 청산한 후 파산 이전 농민전업합작 사와 조합원 간에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청산하도록 한다.

제7장 지원정책

- 제49조 국가는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투자사업을 조건을 갖춘 농민전업합작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0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금을 마련하여 농민전업합작사가 추진하는 정보, 교육훈련, 농산물 품질표준 및 인증,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 시장판매, 기술보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 및 빈곤지역의 농민전업합작사와 국가와 사회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전업합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 제51조 국가의 정책성 금융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농민전업합작사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는 상업성 금융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전업합작사에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격려한다.
- 제52조 농민전업합작사는 국가가 정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와 기타 농업경제 활동에 대해서 상응하는 세금혜택을 받도록 한다.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을 위한 세금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53조 불법 점유, 남용, 압류, 사적이용 혹은 기타 방식으로 농민전업합작사 및 그 조합원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해하거나 비합법적으로 농민전업합작사 및 그 조합원의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우, 농민전업합작사 및 그 조합원에 기부금, 임무 등을 할당하는 경우, 농민전업합작사 및 그 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농민전업합작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54조 농민전업합작사가 등기기관에 허위 등기자료를 제출하거나 사기수단을 동원하여 등기를 취득한 경우 등기기관은 이를 시정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기를 말소한다.
- 제55조 농민전업합작사가 법에 따라 관련부문에 제출하는 재무회계보고 등의 자료 를 허위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장 부칙

제56조 본 법률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중국의 식품 품질안전 현황》 요약

- 1990년대 말 주요 농산물의 단기 공급부족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중국의 농업생산정책은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했으나 각국의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술장벽(녹색장벽)에 부딪히자 품질 향상 및 안정성 제고에 더욱더 주력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2007년 8월 17일 중국의 식품생산과 품질 현황, 식품 관리감독체제, 수출입 식품의 관리감독 현황,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법규, 식품안전을 위한 기술보장체계,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제교류와 협력 현황 등 중국 식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中國的食品質量安全狀況(白皮書)》를 발표하였음.
 - 여기서는 중국의 식품생산과 품질 현황 부분을 요약 번역하여 수록함.

□ 식품가공업의 발전 현황

- 중국에서 식품은 원료와 가공기술의 차이에 따라 28종류(식량가공품, 식용유·유지 및 유지제품, 조미료, 육제품, 유제품, 음료, 편의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음료, 급속냉동식품, 서류 및 튀김식품, 사탕제품(쵸콜렛제품 포함), 차, 주류, 채소제품, 과일제품, 볶음식품 및 견과제품, 알제품, 코코아 및 커피제품, 식용설탕, 수산제품, 녹말 및 녹말제품, 케이크, 콩제품, 꿀제품, 특수 선식품, 기타 식품) 525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식품가공 기업은 전국적으로 44.8만 개가 있으며, 이 중 일정규모 이상 기업 이 2.6만 개로 전체의 5.8%를 차지하지만 시장점유율은 72%로 생산량과 판 매액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일정규모 이하 10인 이상 기업은 6.9만 개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며 18.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35.3만 개로 전체의 78.8%를 차지하며 9.3%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2006년 현재 전체 식품가공 기업의 5.8%를 차지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총생산액은 2005년 대비 23.5% 성장한 21,587억 위안으로 공업총생산액의 6.8%를 차지하였음. 이 중 식량가공, 식용유·유지 및 유지제품, 육류가공, 유제품가공산업의 부가가치와 이윤 증가율은 모두 20%를 초과하였음.
- 2006년도 주요 가공식품 생산량은 밀가루 5,193만 톤, 식용 식물유 1,985.5만 톤, 신선 냉동냉장육 1,112.5만 톤, 유제품 1,459.6만 톤, 차·음료 4,21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2%, 17.5%, 24.0%, 23.5%, 21.5% 증가하였음.
 - 2007년 1~6월 식품가공업의 총생산액은 12,816.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 비 29.9% 증가하였음.

□ 식품의 품질 향상

- 식품 표본조사 합격률이 2006년 77.9%, 2007년 상반기 85.1%로 식품의 품질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2007년 상반기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안전 조사에서 평균 89.2%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이 중 14개 성은 90% 이상의 합격률을 나타냈음.
 - 중국의 10대 소비 식품인 식용유, 유지방제품, 주류, 수산식품, 식량가공식품, 음료, 육제품, 유제품, 조미료, 전분제품, 설탕 가운데 수산식품(85%)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임.
- 식품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생산의 집중도도 증가하여 중 대형 기업의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2006년도 100대 식품기업의 매출액이 전국 식품기업 전체 매출액의 24.9%를 차지하였음.
 - 이 가운데 10대 유제품, 음료, 제당 기업이 각 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7%, 39.5%, 43.6% 였음.
 - 이 밖에도 포도주 생산량 10대 기업이 전국 생산량의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3대 라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6.0%에 달함.

□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수출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90%를 차 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녹색식품 수출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미 40여 개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
 - 현재 전국 무공해농산물 인증 상품은 28,600개이며, 무공해농산물 인증 생산기지는 24,600개로 전체 면적은 2,107만 ha임.
 - 5,315개의 기업이 녹색식품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증 상품수는 14,339 개로 7,200만 톤에 이르며, 인증 면적은 1,000만 ha에 달함.
 - 600여 개 기업이 유기식품 인증을 받아 유기식품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증 상품수는 2,647개로 1,956만 톤에 이르며, 인증 면적은 311만 ha임.
 - 전국적으로 국가급 농업표준화 시범지구와 시범 현(縣)이 각각 539개, 100 개가 있으며, 성급 농업표준화 시범지구는 약 3,500개에 면적은 약 3,333만 ha에 이름.
- 2007년 상반기 검사 결과에 의하면 채소류의 농약잔류검사 평균 합격률은 93.6%이며, 축산물의 클렌부테롤하이드로크라이드(Clenbuterol hydrochloride) 검사의 평균 합격률은 98.8%, 유황류약물 잔류검사 평균 합격률은 99.0%임.
 - 수산물 중 클로로마이세틴오염 검사의 평균 합격률은 99.6%, 니트로푸란류 대사물오염 검사의 평균 합격률은 91.4%, 산지약물 잔류 표본조사 합격률 은 95% 이상임.
- 2006년 중국의 식품 수출은 266.6억 달러로(2,417.3만 톤) 전년 대비 13.3%(16.0%) 증가하였음. 주요 수출 식품은 수산물, 수산제품, 채소, 통조림, 과일즙 및 음료, 식량제품, 조미료, 가금육제품, 주류, 축산물 등임.
 - 중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은 일본, 미국, 한국, 홍콩,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영국 순임.
-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수출 식품의 합격률은 계속해서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06년과 2007년 상반기 대 미국 수출 9.4만 건, 6.5만 건 중 불합격 처리 된 것은 각각 752건과 477건으로 합격률은 각각 99.2%와 99.1%에 달했음.

- 동 기간 대 EU 수출 9.1만 건과 6.2만 건 중 불합격 처리된 식품은 91건과 135건으로 각각 99.9%와 99.8%의 합격률을 나타냈음.
- 일본은 중국의 최대 수출입 대상국으로서 2007년 7월 20일 일본 후생노동 성이 공표한 '2006년도 일본 수입식품 감독 통계' 보고에 의하면 일본의 중국산 수입식품 표본조사 비율은 15%에 달했지만 합격률이 99.42%로 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EU(99.38%), 미국(98.69%) 순이었음.
- 홍콩의 소비식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07년 홍콩 식물환 경위생서(食物環境衛生署)의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표본조사 결과 합격률 이 99.2%와 99.6%를 나타냈음.
- 2006년 중국의 식품 수입은 133.96억 달러로(2027.3만 톤) 전년 대비 25.1%(7.9%) 증가하였음. 주요 수입 식품은 식물유, 수산물, 곡물, 식용 설탕, 유제품, 주류, 연초 및 연초제품, 가금육 등임.
 - 중국은 세계 143개 국가로부터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말 레이시아,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프랑스 순임.
- 최근 수 년 동안 수입된 식품의 품질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2004~2006년 과 2007년 상반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 합격률은 각각 99.3%, 99.5%, 99.1%, 99.3%로 매우 높았음.

Ⅳ. 농업통계

1. 2007년 1~9월 농업총생산액

단위: 억 위안, %

						, i
지 역	1-3월	성장률	1-6월	성장률	1-9월	성장률
전 국	6,648.4	4.7	16,783.7	4.1	31,496.0	4.4
북경시	30	-3.8	93.3	-5.4	171.8	-6.7
천진시	33.2	3.2	113.9	2.5	176	-1.1
하북성	521.5	3.8	1339	2.8	2,644.8	3.5
산서성	52.5	2.5	174	-2.6	397.1	0.9
내몽고	100.5	10.8	218	6.7	447.5	6.4
요녕성	247.3	6.7	663.1	4.7	1,174.7	4.3
길림성	103.3	-0.2	234.8	4.5	512.3	4.9
흑룡강성	157.5	7.4	339.2	3.5	572.6	3.2
상해시	30.2	-3.6	80.1	2.8	124.1	2.4
강소성	424.7	3.9	1,115.6	3.4	1,659.6	2.9
절강성	262.4	3.1	656.3	2.9	1,022.6	3.0
안휘성	319.5	3.5	916	4.3	1,393.4	4.5
복건성	255.8	3.9	567.7	4.1	967.2	4.4
강서성	229.4	4.5	466.8	5.0	827.4	4.9
산동성	560.2	4.1	1,967.4	3.5	3006	3.6
하남성	695.8	5.5	1,776.6	5.0	3,556.4	4.7
호북성	310.6	3.6	681.2	5.2	1,509.4	5.3
호남성	373.2	4.5	829.9	4.3	1,676.4	4.5
광동성	497.2	3.3	1,052.6	3.2	1,846.2	3.4
광 서	224.3	7.1	529.4	5.9	1,053.6	5.8
해남성	117.3	9.3	278.5	8.0	441.8	8.0
중경시	84.2	5.0	232.7	4.9	515.2	8.7
사천성	464.9	6.2	1,064.7	4.8	2,420.2	5.3
귀주성	112.1	7.1	268.8	4.6	475.5	4.9
운남성	192.4	5.8	435.2	6.3	824.4	6.4
서 장	12.1	3.8	n.a.	n.a	56.9	3.8
섬서성	86.9	6.3	292.9	6.4	502.3	6.6
감숙성	55.4	5.0	131.6	1.3	420.8	4.0
청해성	8.2	4.3	21.9	4.4	71.5	5.5
녕 하	19.9	6.8	37.0	4.0	119.2	5.4
_ 신 강	66.1	7.3	205.6	6.6	909.2	7.2

2. 2007년 1~9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전 국 3,320.6 1 북경시 7,814.2 2 천진시 6,150.1 3 하북성 3,588.7 2 산서성 2456.0 1 내몽고 3,809.9 2 요녕성 5,185.4 3 길림성 4,220.9 3 흑룡강성 4,419.0 3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全用 1,925.9 2,165.0 3,134.2 2,067.1 1,209.8 2,979.5 3,350.5 3,302.7 3,489.8 821.0 2,297.4 3,951.8	농업 814.1 448.6 743.2 795.0 495.5 1,350.6 1,646.2 2,475.2 2,479.6 216.1 756.5 816.0	임소득 임업 41.6 33.2 11.9 13.7 10.7 19.3 22.8 18.8 12.0 1.6 42.1	축산업 557.1 549.9 910.7 609.6 252.8 1,502.7 1,338.5 648.6 855.7 69.9	이업 54.9 55.8 158.5 0 0 38.4 1.2 6.3	자산 소득 83.5 680.7 109.5 57.6 99.0 44.2 119.7 45.1 87.9	임금 소득 1,139.2 4,342.6 2,619.0 1,307.5 1,025.0 544.7 1,405.3 458.6 548.7	이전 소득 171.9 625.9 287.5 156.5 122.1 241.4 310.0 414.6 292.7
북경시 7,814.2 2 천진시 6,150.1 3 하북성 3,588.7 2 산서성 2456.0 1 내몽고 3,809.9 2 요녕성 5,185.4 3 길림성 4,220.9 3 흑룡강성 4,419.0 3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2,165.0 3,134.2 2,067.1 1,209.8 2,979.5 3,350.5 3,302.7 3,489.8 821.0 2,297.4 3,951.8	448.6 743.2 795.0 495.5 1,350.6 1,646.2 2,475.2 2,479.6 216.1 756.5	33.2 11.9 13.7 10.7 19.3 22.8 18.8 12.0	549.9 910.7 609.6 252.8 1,502.7 1,338.5 648.6 855.7	55.8 158.5 0 0 0 38.4 1.2 6.3	680.7 109.5 57.6 99.0 44.2 119.7 45.1 87.9	4,342.6 2,619.0 1,307.5 1,025.0 544.7 1,405.3 458.6	625.9 287.5 156.5 122.1 241.4 310.0 414.6
천진시 6,150.1 3 하북성 3,588.7 2 산서성 2456.0 1 내몽고 3,809.9 2 요녕성 5,185.4 3 길림성 4,220.9 3 흑룡강성 4,419.0 3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3,134.2 2,067.1 1,209.8 2,979.5 3,350.5 3,302.7 3,489.8 821.0 2,297.4 3,951.8	743.2 795.0 495.5 1,350.6 1,646.2 2,475.2 2,479.6 216.1 756.5	11.9 13.7 10.7 19.3 22.8 18.8 12.0	910.7 609.6 252.8 1,502.7 1,338.5 648.6 855.7	158.5 0 0 0 38.4 1.2 6.3	109.5 57.6 99.0 44.2 119.7 45.1 87.9	2,619.0 1,307.5 1,025.0 544.7 1,405.3 458.6	287.5 156.5 122.1 241.4 310.0 414.6
하북성 3,588.7 2 산서성 2456.0 1 내몽고 3,809.9 2 요녕성 5,185.4 3 길림성 4,220.9 3 흑룡강성 4,419.0 3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2,067.1 1,209.8 2,979.5 3,350.5 3,302.7 3,489.8 821.0 2,297.4 3,951.8	795.0 495.5 1,350.6 1,646.2 2,475.2 2,479.6 216.1 756.5	13.7 10.7 19.3 22.8 18.8 12.0	609.6 252.8 1,502.7 1,338.5 648.6 855.7	0 0 0 38.4 1.2 6.3	57.6 99.0 44.2 119.7 45.1 87.9	1,307.5 1,025.0 544.7 1,405.3 458.6	156.5 122.1 241.4 310.0 414.6
산서성 2456.0 1 내몽고 3,809.9 2 요녕성 5,185.4 3 길림성 4,220.9 3 흑룡강성 4,419.0 3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1,209.8 2,979.5 3,350.5 3,302.7 3,489.8 821.0 2,297.4 3,951.8	495.5 1,350.6 1,646.2 2,475.2 2,479.6 216.1 756.5	10.7 19.3 22.8 18.8 12.0	252.8 1,502.7 1,338.5 648.6 855.7	0 0 38.4 1.2 6.3	99.0 44.2 119.7 45.1 87.9	1,025.0 544.7 1,405.3 458.6	122.1 241.4 310.0 414.6
내몽고 3,809.9 2 요녕성 5,185.4 3 길림성 4,220.9 3 흑룡강성 4,419.0 3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2,979.5 3,350.5 3,302.7 3,489.8 821.0 2,297.4 3,951.8	1,350.6 1,646.2 2,475.2 2,479.6 216.1 756.5	19.3 22.8 18.8 12.0 1.6	1,502.7 1,338.5 648.6 855.7	0 38.4 1.2 6.3	44.2 119.7 45.1 87.9	544.7 1,405.3 458.6	241.4 310.0 414.6
요녕성 5,185.4 3 길림성 4,220.9 3 흑룡강성 4,419.0 3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3,350.5 3,302.7 3,489.8 821.0 2,297.4 3,951.8	1,646.2 2,475.2 2,479.6 216.1 756.5	22.8 18.8 12.0 1.6	1,338.5 648.6 855.7	38.4 1.2 6.3	119.7 45.1 87.9	1,405.3 458.6	310.0 414.6
길림성4,220.93흑룡강성4,419.03상해시8,916.2강소성5,423.02	3,302.7 3,489.8 821.0 2,297.4 3,951.8	2,475.2 2,479.6 216.1 756.5	18.8 12.0 1.6	648.6 855.7	1.2 6.3	45.1 87.9	458.6	414.6
흑룡강성 4,419.0 3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3,489.8 821.0 2,297.4 3,951.8	2,479.6 216.1 756.5	12.0 1.6	855.7	6.3	87.9		
상해시 8,916.2 강소성 5,423.0 2	821.0 2,297.4 3,951.8	216.1 756.5	1.6				548.7	292.7
강소성 5,423.0 2	2,297.4 3,951.8	756.5		69.9	66.7	-00.0		
	3,951.8		42.1		00.7	589.3	6,336.2	1,169.7
절강성 8.213.9 ³		816.0		375.6	166.1	170.3	2,658.8	296.5
= 0 0 0,=1,7.7 -	1 602 2	010.0	99.7	778.9	176.6	376.7	3,441.6	443.8
안휘성 2,958.5 1	1,493.0	806.6	37.1	292.0	38.5	75.6	1,240.6	149.3
복건성 4,100.7 2	2,182.5	740.0	84.6	434.5	131.0	67.9	1,517.4	332.9
강서성 2,895.9 1	1,604.3	791.8	42.2	383.9	32.0	26.1	1,133.2	132.4
산동성 4,498.1 2	2,730.8	1,229.5	55.9	762.9	17.8	102.8	1,480.3	184.2
하남성 2,862.8 1	1,705.6	841.9	25.2	530.9	7.6	39.9	991.7	125.5
호북성 2,875.0 1	1,675.1	840.3	35.7	370.5	126.8	23.1	1,100.6	76.2
호남성 3,145.6 1	1,565.0	443.8	40.0	486.9	54.3	23.5	1,277.4	279.7
광동성 4,642.5 1	1,765.2	597.5	21.9	526.7	246.1	217.7	2,402.3	257.4
광 서 2,653.7 1	1,827.0	838.0	49.1	645.1	55.0	25.8	701.4	99.4
해남성 3,124.0 2	2,462.7	952.7	303.6	447.5	429.7	37.1	498.4	125.9
중경시 2,758.3 1	1,122.6	253.7	22.4	605.7	22.3	41.2	1,313.7	280.8
사천성 2,911.4 1	1,484.7	351.3	20.5	766.0	36.3	61.1	1,169.7	195.9
귀주성 1,657.0	852.3	252.3	15.8	396.1	1.2	32.3	636.0	136.5
운남성 2,068.8	1,515.7	699.9	106.3	480.1	3.3	69.3	388.1	95.7
서 장 1,753.5	1,127.1	432.8	78.4	285.5	0	70.8	378.7	177.1
섬서성 2,362.1	1,368.5	668.9	15.9	369.1	1.1	46.4	790.4	156.7
감숙성 1,608.2	935.6	522.5	36.3	182.4	1.3	10.8	532.6	129.1
청해성 2,046.1 1	1,063.6	379.7	5.7	382.7	3.1	109.3	609.5	263.8
녕하 2,784.5	1,891.1	738.5	10.8	732.9	22.6	41.9	760.2	91.3
신 강 2,273.5	1,911.5	964.7	76.1	566.9	0	73.6	198.1	90.3

3. 2007년 1~9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지출

				산비용 ㅈ	세비	소비	자산성	 이전		
지역 합기	합 계	소 계	경영비용			생산성	지출	고~! 지출	^1 년 6 지출	지출
		- /II	소 계	농업	축산업	고정자산	/기원	712	\15	
전 국	3,076.4	907.0	800.3	401.4	267.9	106.7	6.7	1,926.0	19.4	217.2
북경시	5,891.0	875.6	827.7	146.2	291.8	47.9	8.5	4,659.7	2.5	344.8
천진시	3,994.4	1,390.1	1,205.2	234.4	619.2	184.9	8.8	2,371.1	17	207.5
하북성	2,981.4	1,038.4	959.9	426.8	354.4	78.5	9.2	1,739.0	9.5	185.4
산서성	2,507.5	596.6	543.4	291.5	139.1	53.2	0.9	1,743.1	9.5	157.5
내몽고	3,744.0	1,489.7	1,261.3	854.5	374.3	228.5	4.7	1,981.5	55.7	212.4
요녕성	4,266.2	1,649.7	1,521.1	697.1	757.9	128.6	3.6	2,083.3	30.3	499.4
길림성	4,417.0	1,738.6	1,462.6	1,117.5	310.8	276.1	4.4	2,070.6	120.3	483.0
흑룡강성	4,679.1	2,040.3	1,748.5	1,226.5	474.2	291.8	5.6	1,984.8	207.7	440.7
상해시	7,318.2	411.6	393.5	105.8	28.2	18.2	1.6	6,243.3	3.8	657.9
강소성	4,257.7	893.1	826.9	354.8	184.7	66.3	22.4	2,860.2	15.3	466.7
절강성	6,787.4	1,511.2	1,368.4	300.2	574.7	142.8	8.9	4,694.0	36.0	537.4
안휘성	2,676.5	694.8	599.6	373.9	126.4	95.2	12.3	1,791.8	3.0	174.7
복건성	3,633.0	796.7	732.0	318.3	263.5	64.7	1.9	2,578.9	11.1	244.3
강서성	2,661.2	809.0	743.9	433.3	228.2	65.1	5.6	1,621.2	12.1	213.4
산동성	3,741.3	1,215.4	1,088.4	519.3	430.5	127	12.4	2,304.9	12.7	195.9
하남성	2,472.2	702.0	618.0	307.7	242.2	84.0	1.9	1,606.1	3.8	158.4
호북성	2,567.5	823.8	771.1	413.6	188.1	52.7	11.9	1,662.6	3.5	65.6
호남성	2,998.6	747.2	685.7	305.9	231.2	61.5	6.5	1,951.0	3.4	290.4
광동성	3,685.5	833.0	802.1	244.9	363.1	30.9	4.6	2,686.6	11.0	150.4
광 서	2,346.7	847.1	754.5	422.1	239.1	92.5	4.5	1,398.3	7.9	88.8
해남성	2,328.2	808.6	775.9	346.8	171.0	32.7	1.3	1,435.2	2.9	80.2
중경시	2,028.9	479.0	411.3	188.1	181.0	67.7	5.9	1,331.1	0.7	212.2
사천성	2,434.0	717.5	645.1	212.3	335.7	72.4	10.3	1,505.4	7.6	193.2
귀주성	1,489.3	368.1	318.9	152.4	130.0	49.3	1.7	949.4	4.1	166.0
운남성	2,263.9	774.9	645.4	322.8	214.2	129.5	1.6	1,362.0	17.7	107.7
서 장	1,399.2	282.0	136.7	56.8	26.0	145.4	1.3	1,095.2	0.1	20.6
협서성	2,421.1	684.8	538.9	302.9	160.2	145.8	5.9	1,551.3	5.4	173.7
감숙성	1,655.8	506.1	416.0	328.2	60.8	90.2	2.3	1,050.0	0.7	96.7
청해성	1,998.5	564.5	432.9	202.7	99.5	131.6	2.9	1,311.5	2.2	117.4
녕 하	3,015.4	1,268.1	975.8	491.2	357.9	292.3	3.1	1,486.2	10.8	247.2
신 강	3,036.5	1,506.2	1,208.0	936.3	211.3	298.2	4.0	1,328.3	51.5	146.4

4. 중국의 농업재정 지출, 1978~2005년

A -	국가재정	농업GDP	농업재정 지출							비중(%)	
연 도	(A)	(B)	합계(C)	농업보조	시설투자	R&D	구제비용	기타	C/A	C/B	
1978	1,122.1	1,018.4	150.7	77.0	51.1	1.1	6.9	14.6	13.4	14.8	
1979	1,281.8	1,258.9	174.3	90.1	62.4	1.5	9.8	10.5	13.6	13.8	
1980	1,228.8	1,359.4	150.0	82.1	48.6	1.3	7.3	10.7	12.2	11.0	
1981	1,138.4	1,545.6	110.2	73.7	24.2	1.2	9.1	2.1	9.7	7.1	
1982	1,230.0	1,761.6	120.5	79.9	28.8	1.1	8.6	2.1	9.8	6.8	
1983	1,409.5	1,960.8	132.9	86.7	34.3	1.8	9.4	0.8	9.4	6.8	
1984	1,701.0	2,295.5	141.3	95.9	33.6	2.2	9.6	0.0	8.3	6.2	
1985	2,004.3	2,541.6	153.6	101.0	37.7	2.0	12.9	0.0	7.7	6.0	
1986	2,204.9	2,763.9	184.2	124.3	43.9	2.7	13.3	0.0	8.4	6.7	
1987	2,262.2	3,204.3	195.7	134.2	46.8	2.3	12.5	0.0	8.7	6.1	
1988	2,491.2	3,831.0	214.1	158.7	39.7	2.4	13.3	0.0	8.6	5.6	
1989	2,823.8	4,228.0	265.9	197.1	50.6	2.5	15.7	0.0	9.4	6.3	
1990	3,083.6	5,017.0	307.8	221.8	66.7	3.1	16.3	0.0	10.0	6.1	
1991	3,386.6	5288.6	347.6	243.6	75.5	2.9	25.6	0.0	10.3	6.6	
1992	3,742.2	5,800.0	376.0	269.0	85.0	3.0	19.0	0.0	10.0	6.5	
1993	4,642.3	6882.1	440.5	323.4	95.0	3.0	19.0	0.0	9.5	6.4	
1994	5,792.6	9457.2	533.0	399.7	107.0	3.0	23.3	0.0	9.2	5.6	
1995	6,823.7	11,993.0	574.9	430.2	110.0	3.0	31.7	0.0	8.4	4.8	
1996	7,937.6	13,844.2	700.4	510.1	141.5	4.9	43.9	0.0	8.8	5.1	
1997	9,233.6	14,211.2	766.4	560.8	159.8	5.5	40.4	0.0	8.3	5.4	
1998	10,798.2	14,552.4	1,154.8	626.0	460.7	9.1	58.9	0.0	10.7	7.9	
1999	13,187.7	14,472.0	1,085.8	677.5	357.0	9.1	42.2	0.0	8.2	7.5	
2000	15,886.5	14,628.2	1,231.5	766.9	414.5	9.8	40.4	0.0	7.8	8.4	
2001	18,902.6	15,411.8	1,456.7	918.0	480.8	10.3	47.7	0.0	7.7	9.5	
2002	22,053.2	16,117.3	1,580.8	1,102.7	423.8	9.9	44.4	0.0	7.2	9.8	
2003	24,650.0	16,928.1	1,754.5	1,134.9	527.4	12.4	79.8	0.0	7.1	10.4	
2004	28,486.9	20,768.1	2,337.6	1,693.8	542.4	15.6	85.9	0.0	8.2	11.3	
2005	33,930.3	21,412.7	2,450.3	1,792.4	512.6	19.9	125.4	0.0	7.2	11.4	

M88

중국농업동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2.

발 행 2007.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text{-}739\text{-}3911\text{-}5 \qquad http://www.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